발간등록번호
71-7530000-000186-10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4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노 사 협 력 과

발간사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중심인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행정업무 효율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는 직종별 다양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져 담당자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급여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쉽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매뉴얼에는 ‘임금의 정의’부터 ‘퇴직급여제도’까지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매 단원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어 급여담당자의 업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초로 보급하는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매뉴얼이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경기도교육감 임 태 희

목 차

<주요 변경 사항> ····· 1

Ⅰ. 개요 ····· 2
1. 목적 ····· 2
2. 근거 ····· 2

Ⅱ. 임금의 정의 및 지급원칙 등 ····· 3
1. 임금의 정의 ····· 3
2. 임금지급의 원칙 ····· 3
3.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4
4. 채권 소멸시효 ····· 5

Ⅲ. 임금의 구분 ····· 6
1. 통상임금 ····· 6
2. 평균임금 ····· 7

Ⅳ. 임금체계의 분류 ····· 8
1. 근무형태에 따른 분류 ····· 8
2.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 ····· 9
3. 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 10

Ⅴ.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 11
1. 임금 체계 ····· 11
2. 2024년도 임금 지급기준 ····· 12
3. 2024년도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등 개요 ····· 13
4. 2024년도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등 세부내용 ····· 15
5. 직무관련수당 ····· 36
6. 주휴수당 지급방법 ····· 37
7. 연장 · 휴일 ·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 ····· 43
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 48

Ⅵ. 사례별 임금 지급방법 ····· **63**

1.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달 임금 지급방법 ····· 63
2. 휴가 사용 시 임금 지급방법 ····· 70
3.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방법 ····· 76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임금 지급방법 ····· 78
5.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 시 임금 지급방법 ····· 79
6. 신분변동 시 임금 지급방법 ····· 80
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임금 지급방법 ····· 82
8. 교육훈련에 따른 임금 지급방법 ····· 84
9. 조합원 교육에 따른 임금 지급방법 ····· 85

Ⅶ.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임금 지급방법 ····· **86**

1.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임금 지급방법 ····· 86
2.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 임금 지급방법 ····· 92

Ⅷ. 퇴직급여제도 ····· **96**

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 96
2. 퇴직급여 산정방법 ····· 98

Ⅸ. 4대 보험 ····· **109**

1. 가입 대상 ····· 109
2. 보험료율 ····· 109
3.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 110
4. 고용보험 과태료 ····· 111

참고

1.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직종 ····· 112
2. NEIS 급여 자료 ····· 113

미래교육의 중심,

자율 균형 미래

새로운 경기교육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주요 변경 사항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23년	2024년		
		기준금액	변경내용	적용시기
기본급	1유형: 월 2,118,000원 2유형: 월 1,918,000원	**1유형: 월 2,186,000원** **2유형: 월 1,986,000원**	68,000원 인상	기관: 2024.1월 학교: 2024.3월
정액 급식비	월 14만원	**월 15만원**	10,000원 인상	2024.1월
근속수당	월 39,000원 ~ 819,000원 (급간 39,000원) (만 21년 근속 상한)	월 39,000원 ~ **858,000원** (급간 39,000원) **(만 22년 근속 상한)**	상한 1년 연장	기관: 2024.1월 학교: 2024.3월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첫째자녀 월 3만원 둘째자녀 월 7만원 셋째이후 자녀 월 11만원 그 외 부양가족 월 2만원	(동결)	-	2024.1월
정기 상여금	연 100만원	(동결)	-	1월, 8월 균분지급
명절휴가비	연 160만원	**연 170만원**	100,000원 인상	2024.설날부터
초단시간 시간급	시간당 11,540원	**시간당 12,500원**	960원 인상 (생활임금 적용)	기관: 2024.1월 학교: 2024.3월

시급제 적용단가

근로시간 구분	적용단가		적용시기
	2023년	2024년	
주 15시간 미만	임금협약단가(11,540원)	생활임금(12,500원)	기관: 2024.1월 학교: 2024.3월
주 15시간 이상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생활임금(10,840원)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I 개요

① 목 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교육공무직원의 급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② 근 거

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

나. 단체(임금)협약

- 경기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5년 임금 · 단체협약(2015.3.18.)
- 경기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6년 임금 · 단체협약(2016.8.22.)
- 전국 시 · 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7년 집단임금협약(2017.10.31.)
- 경기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7년 임금협약(2017.12.22.)
- 전국 시 · 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8년 집단임금협약(2018.11.29.)
- 경기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8년 임금협약(2019.2.11.)
- 전국 시 · 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9년 집단임금협약(2019.10.21.)
- 전국 시 · 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9년 집단임금 보충협약(2019.11.30.)
- 전국 시 · 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20년 집단임금협약(2021.1.22.)
- 전국 시 · 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21년 집단임금협약(2022.2.14.)
- 전국 시 · 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22년 집단임금협약(2023.4.25.)
- 전국 시 · 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23년 집단임금협약(2023.12.21.)

다. 취업규칙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2022.11.1.)
-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2022.11.1.)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Ⅱ 임금의 정의 및 지급원칙 등

① 임금의 정의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② 임금지급의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지급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은 매월 17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3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관리총괄부서, 예산부서, 사업부서에서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보수의 지급은 사회보험 중 본인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계약의 해지 등 임금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월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지급일은 당월 17일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이 보수지급일 이후인 경우 채용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⑤ 보수지급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3조(임금의 구성과 계산·지급방법)

③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지급일은 당월 17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④ 신규채용, 휴·복직, 퇴직 등 임금 변동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월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연장 가능(「근로기준법」 제36조)

3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미작성(기재누락 포함),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
- 임금명세서 관련 법정 서식은 없으며 나이스 급여명세서로 갈음 가능

임금대장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4 채권 소멸시효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함(「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함(「지방재정법」 제82조)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Ⅲ 임금의 구분

① 통상임금

가. 정의

-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나. 산입범위

구 분	기본급 및 수당
산 입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미산입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다. 적용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산정 시

라. 통상임금(시간급) 계산방법

- [기본급(월급)+ 통상임금 산입수당 월액]÷월 임금산정시간*

구분	주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주35시간	주30시간	주25시간	주20시간	주15시간
월 임금산정시간	209	182	156	130	104	78

* 계산예시: 209시간=(365÷7÷12)×(40+0+8)
- (365÷7÷12)는 4.345로 계산, 계산한 결과값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그 외 시간 예시(주 18시간 : 94시간): 4.345×[18+0+(18÷40×8)]

- 통상임금을 계산한 결과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통상임금(시간급) 계산

- 2024. 3월 통상임금 시간급(조리실무사,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속연수: 2년 이상(만2년), (2024. 1월 정기상여금 지급 받음)
  : [1,986,000원+{50,000원(위험)+150,000원(급식)+78,000원(근속)+(500,000원÷6개월)(상여금)}]÷209시간≒11,231원

※ 정기상여금 월액: 500,000원÷6개월로 계산
- 2024. 1월 정기상여금 지급 : 2024. 1. ~ 2024. 7.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 월액 포함하여 산정
- 2024. 8월 정기상여금 지급 : 2024. 8. ~ 2024. 12. 통상임금 산정 시 정기상여금 월액 포함하여 산정

※ 방학 중 비근무자의 통상임금은 "방학기간 속한 달"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으로 계산함 (학기 중과 동일하며, 실제 지급받은 일할계산 금액 등으로 계산하지 아니함)

② 평균임금

가. 정의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나. 산입범위

구 분	기본급 및 수당
월 단위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 단위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다. 적용

-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산정 시

※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라. 평균임금 계산방법

- (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설명 평균임금

①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1년간 지급된 연 단위 임금)×3월÷12월]+(3개월간 지급된 월 단위 임금)

②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수는 90일이 아닐 수 있으며, 역(歷)에 의하여 계산함, 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함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기간이 없게 된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첫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 제외되는 기간
- 산정 사유 발생일
-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 · 후 휴가 기간
- 육아휴직기간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3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Ⅳ 임금체계의 분류

① 근무형태에 따른 분류

가. 상시근무자

1) 학기 중과 방학 중 모두 근로하는 자

2) 임금 기준

- 월급제 적용(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또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나. 방학 중 비근무자

1) 근로계약상 방학 중 근로 의무가 없는 근로자

※ 직종별 방학 중 근무일수는 각 사업부서 별도계획에 따름

2) 임금 기준

- 월급제 적용(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또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 방학기간이 없는 달: (기본급 및 수당) 전액 지급
- 방학기간이 속한 달: (기본급 및 수당) 일할계산(단, 일부수당은 전액지급)
  - 일할계산 방법: (기본급 및 해당수당)×(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해당 월 유급일수)

구분	항목
전액지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일할계산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2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

가. 통상 근로자

1)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

2) 임금 기준

- 월급제 적용(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 매월 기본급 및 수당 전액 지급

나. 단시간근로자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2) 임금 기준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월급제
  (단,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시급제 적용)
  - 기본급 및 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지급(단, 일부수당은 전액지급)

구분	항목
전액지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비례지급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계산 방법: 통상 근로자 지급액×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2018. 9. 1. 이전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계산하지 않고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시급제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시급제 적용
  - 생활임금으로 정한 시간급(12,500원) 적용

근로시간 구분		임금체계	단가
주 15시간 미만		시급제	생활임금(시간급 12,500원)
주 15시간 이상	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급제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급제	임금협약 금액

3 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가. 무기계약 근로자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임금 기준

- 월급제 적용: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무기계약 근로자
- 시급제 적용: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무기계약 근로자
- 호봉제 적용: 구육성회직원

나. 기간제 근로자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임금 기준

- 월급제 적용: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급제 적용)
- 시급제 적용: 계약기간 1개월 미만
-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총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 시점부터 월급제(처우개선수당) 적용
  - ▸ 계약기간에 따른 임금 계산 방법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번호	당초 계약	연장 계약	총계약 기간	임금 계산
1	1개월 미만	연장 ×	1개월 미만	생활임금 시간급 12,500원
2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생활임금 시간급 12,500원
3	1개월 미만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생활임금 시간급 12,500원+월급제*(처우개선수당) * 계약 연장 시점부터 월급제 적용
4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생활임금 시간급 12,500원+월급제*(처우개선수당) * 계약 연장 시점부터 월급제 적용
5	1개월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월급제(처우개선수당)+월급제(처우개선수당)
6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월급제(처우개선수당)+월급제(처우개선수당)
7	1개월 이상 계약(무기계약직 포함) 후 중도퇴사 등으로 1개월 미만 근로 시 월급(처우개선수당) 신분변동 일할 계산(시급제×)			

※ 계약기간 연장으로 임금 지급기준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고지 후 근로자 동의 필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V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1 임금 체계

임금 등

- **기본급(2종)**
  - 1유형: • 매월 2,186,000원
  - 2유형: • 매월 1,986,000원
  - 유형 외: • 직종별 상이
- **각종수당 (처우개선수당)등***
  - 정액급식비: • 매월 150,000원
  - 근속수당: • 매월 급간 39,000원 (상한 만22년)
  - 정기상여금: • 연간 1,000,000원 (특수운영직군 연 500,000원)
  -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 그 외 부양가족 월 20,000원
    - 첫째자녀 월 30,000원
    - 둘째자녀 월 70,000원
    - 셋째이후 자녀 월 110,000원
  - 명절휴가비: • 연간 1,700,000원
  - 맞춤형복지비: • 연간 800,000원 (건강검진비 격년에 200,000원)
- **직무관련수당****

*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은 지급직종에 한함

** 직무관련수당은 사업부서 별도 지침에 따름

2 2024년도 임금 지급기준

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1)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 시간급: 12,500원
- 적용시기: 학교(2024. 3. 1.), 교육행정기관(2024. 1. 1.)
- 적용대상: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기도교육감 소속 근로자

나.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직종		2023년	2024년
1유형	영양사 · 사서 등	2,118,000원	2,186,000원
2유형	행정실무사 · 조리(실무)사 등	1,918,000원	1,986,000원
시급제 근로자		시간급 11,540원	시간급 12,500원
적용 시기	학교	2023. 3. ~ 2024. 2.	2024. 3. ~
	기관	2023. 1. ~ 2023. 12.	2024. 1. ~

※ 1유형, 2유형 기본급(월급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 2024년 회계연도 시급제 근로자의 시간급은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시간급 12,500원)에 따름
※ 그 외 별도 임금협약 표시 및 사업부서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별도 단가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직원은 그에 따름

구 분	유형	금액	신분변동[1]	방학 중 비근무자[2]	단시간근로자
기본급 (월급제)	1유형 2유형	2,186,000원 1,986,000원	일할	일할	시간 비례

1) 신분변동: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2)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 (1 · 2유형)

구 분	직 종 명
1유형	영양사, 사서, 특수교육종일반강사,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 생활인권전문상담사, Wee센터 임상심리사, Wee센터 사회복지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강사, 학부모지원전문가, 학부모상담사, Wee프로젝트 전문상담사(구,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근로조건변경 동의시) 등
2유형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초등보육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근로조건변경 비동의시), 특수교육지도사,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보조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행정실무사, 급식(배식)보조원, 통학차량보조원, 안내원, 운전원, 청소원, 실습보조원, 시설관리(보조)원, 당직전담(경비)원, 사감, 취업지원관, 특수운영직군(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 등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611(2024. 1. 12.) 관련 근로조건변경 동의시 1유형, 비동의시 2유형 적용

3 2024년도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등 개요

가. 지급대상

- 지급 직종에 해당하며(붙임 1 참조)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단,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나. 지급제외

- 구육성회직원
  ※ 단, 맞춤형복지비만 처우개선비 예산으로 지급
- 채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위탁 · 용역 근로자 등)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
  ※ 단, 2015. 2. 28.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자녀당 최초 1년) · 질병 · 간병 휴직 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 별도 계획에 따름

다. 적용시기: 학교(2024. 3. 1.), 교육행정기관(2024. 1. 1.)

라. 수당별 지급금액, 시기, 요건 등

구 분	지급금액	지급 시기	지급요건	신분[1] 변동	방학 중[2] 비근무자	단시간[3] 근로자
정액 급식비	월 15만원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일할	일할	전액
근속 수당	월 39,000원 ~ 월 858,000원 (급간 39,000원, 상한 만22년)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만1년 이상인 자	일할	전액	시간 비례
정기 상여금	연 100만원	1, 8월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보수지급일(17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충족시 전액	전액	시간 비례
가족 수당	배우자 월 4만원 그 외 부양가족 월 2만원 첫째자녀 월 3만원 둘째자녀 월 7만원 셋째이후 자녀 월 11만원	매월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지급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일할	전액	전액
명절 휴가비	연 170만원 (2024년 설부터)	설날 추석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	충족시 전액	전액	시간 비례
맞춤형 복지비	연 800포인트 건강검진비 (격년 20만원 상한)	연 1회 배정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건강검진비 만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	월할	전액	전액

1) 신분변동: 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2)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3)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

4 2024년도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등 세부내용

가. 정액급식비

구분	내용
지급대상	• 3-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급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 •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일할계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 일할계산 • 단시간근로자: 시간비례 하지 않고 전액 지급(2024.1.1.부터)
지급금액	• 월 150,000원
지급시기	• 매월

나. 근속수당

구분	내용
지급대상	• 3-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속연수 (전임경력 포함)가 1년 이상인 자(대체 근로자 포함) • 2015. 2. 28.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자녀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 질병 및 간병휴직 시 휴직자에게도 지급
지급방법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202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경력재산정일: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 •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월중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할계산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 전액 지급 •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 경력재산정일 ▸ 2021. 2. 28. 이전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경력재산정일(기존과 동일) ▸ 2021. 3. 1. 이후 근속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력재산정일 ☞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①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1. 1.자 또는 7. 1.자인 경우: 1. 1., 7. 1. ②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3. 1.자 또는 9. 1.자인 경우: 3. 1., 9. 1. • 경력인정 휴직 중 경력산정 및 경력재산정 실시(※ 2023. 5. 2. 부터 적용)
지급금액	• 1년 이상 재직자 월 39,000원부터 근속 1년당 월 39,000원 가산 (상한 22년)
지급단위	• 매월(지급 시기: 학교 3월, 기관 1월)
유의사항	• 최초 정해진 경력재산정일은 재직기간 중 변동없음 ▸ 경력재산정이 1.1.인 경우 1.1. 또는 7.1. 경력재산정 가능(3.1. 또는 9.1. 절대 불가) ▸ 기산정자의 경우 규정이 변경되어도 경력산정일이 변경되지 않음

참고 근속연수별 근속수당 지급액

(단위: 원)

근속연수 (전임경력+계속근로기간)	월 지급액	근속연수 (전임경력+계속근로기간)	월 지급액
1년이상 ~ 2년미만	39,000	12년이상 ~ 13년미만	468,000
2년이상 ~ 3년미만	78,000	13년이상 ~ 14년미만	507,000
3년이상 ~ 4년미만	117,000	14년이상 ~ 15년미만	546,000
4년이상 ~ 5년미만	156,000	15년이상 ~ 16년미만	585,000
5년이상 ~ 6년미만	195,000	16년이상 ~ 17년미만	624,000
6년이상 ~ 7년미만	234,000	17년이상 ~ 18년미만	663,000
7년이상 ~ 8년미만	273,000	18년이상 ~ 19년미만	702,000
8년이상 ~ 9년미만	312,000	19년이상 ~ 20년미만	741,000
9년이상 ~ 10년미만	351,000	20년이상 ~ 21년미만	780,000
10년이상 ~ 11년미만	390,000	21년이상 ~ 22년미만	819,000
11년이상 ~ 12년미만	429,000	22년이상 ~	858,000

※ (참고) 초등스포츠강사 근속수당 (2024.3월부터)

1년 이상 (만1년)	2년 이상 (만2년)	3년 이상 (만3년)	4년 이상 (만4년)	5년 이상 (만5년)	6년 이상 (만6년)	7년 이상 (만7년)	8년 이상 (만8년)	9년 이상 (만9년)	10년 이상 (만10년)	11년 이상 (만11년)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20,000
12년 이상 (만12년)	**13년 이상 (만13년)**	**14년 이상 (만14년)**	**15년 이상 (만15년)**	**16년 이상 (만16년)**	**17년 이상 (만17년)**	**18년 이상 (만18년)**	**19년 이상 (만19년)**	**20년 이상 (만20년)**	**21년 이상 (만21년이상)**	**22년 이상 (만22년이상)**
240,000	260,000	280,000	300,000	320,000	340,000	360,000	380,000	400,000	420,000	440,000

* 초등스포츠강사 근속수당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 별도 계획에 따름.

근속수당 지급을 위한 경력 산정 방법

1. 경력산정일 및 경력재산정일

가. 경력산정일: 전임경력과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만1년 이상이 되어 근속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날

나. 경력재산정일: 경력산정일 이후 계속근로 및 휴직 등으로 변동된 근속연수를 적용하는 날

- 2021. 2. 28.이전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경력재산정일(기존과 동일)
  - 경력재산정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2021. 3. 1. 이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음
  - 경력재산정일

    1.1. 또는 7.1.자로 대상자가 된 경우: 1.1, 7.1.,

    3.1. 또는 9.1.자로 대상자가 된 경우: 3.1., 9.1.
- 2021. 3. 1. 이후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경력재산정일
  -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1.1, 3.1, 7.1, 9.1 중

    ①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1.1.자 또는 7.1.자인 경우: 1.1, 7.1

    ②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3.1.자 또는 9.1.자인 경우: 3.1, 9.1

    ※ 경력산정 기준일 입사자의 경우, 당월 급여지급일 이전에 전임경력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사전에 안내
- 경력인정 휴직 중 경력산정 및 경력재산정 실시(※23. 5. 2.부터 적용)

2. 전임경력 인정

가. 직종과 관계없이 ① 경기도교육감 및 타 시・도 교육감 소속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 교육행정기관 또는 국립학교(유・초・중・고・특수)에서

②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시 주 소정근로시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방학 중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학기 중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 (예외적으로, 방학 중 근로시간이 더 긴 경우에는 학기와 방학기간을 구분하며 각각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함)

나. 2018. 9. 1.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부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전임경력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적용대상: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 계산방법(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인정): 근무기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2018. 9. 1. 이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경력산정 시 채용 전 경력의 주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인정하여야 함
- 적용시기: 2018. 9. 1.(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공통)

다. 인정제외: 교원 대체인력(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 등)으로 근무경력 및 위탁, 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경력은 제외

3. 경력 산정 방법

- 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한 후 일 단위 절사한 경력과 현 근무지 경력을 합산하여 월 단위로 인정 (5년 4월 29일 → 5년 4월, 일 단위 절사)
-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전 기간 (방학기간 포함)이 포함되며,
-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 2004년도 이전에 채용된 직원 중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학기간은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 됨
- 경력에 포함되는 경우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 자녀당 최초 1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사업장의 휴업기간 등
  ※ 경력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 질병휴직 등 경력은 경력 미합산

예시 **근속수당 경력 산정 방법**

전 근무 경력(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년 5월 20일
현 근무 경력(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6월 15일
→ 전 근무 경력 2년 5월(일 단위 절사) + 현 근무 경력 6월 15일 = 2년 11월 15일
∴ 2년 11월(일 단위 절사)

4. 예외 적용

- 만 60세 이상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한정하여 경력 산정하며(만 60세 미만의 전임경력 미인정), 근속연수가 만1년 이상이 되어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부터 근속수당을 지급함
  ※ 단, 근로(계약)기간 중 만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기 지급받던 근속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함

5. 경력증명절차

발급 요청 **(교육공무직원)**	전(前) 근무지에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
⇩	
경력증명서 발급 **(전(前) 근무지)**	근무경력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주 소정근로시간 반드시 기재)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 증명서 등
⇩	
경력증명서 제출 **(교육공무직원)**	전(前) 근무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
⇩	
전(前) 근무지 경력 적용 **(현 근무지)**	전(前) 근무지 경력 적용하여 근속수당 산정 (증빙자료 보관 철저)

예시 2021. 3. 1. 이후 근속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

1. [신규채용 - 1년이상 전임경력, 1일자 신규채용]

행정실무사(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23. 4. 1.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채용 당시 전임경력 만1년(전임경력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① 근속수당 지급기준 충족일: 2023. 4. 1.
② 2023. 4월부터 근속수당 지급액: 39,000원
③ 경력재산정일: 1. 1., 7. 1.
- 2023. 4. 1. 기준 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 2023. 4월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7.1.자이므로 1. 1., 7. 1.

2. [신규채용 - 1년이상 전임경력, 월중 신규채용]

행정실무사(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23. 4. 12.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채용 당시 전임경력 만1년(전임경력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① 근속수당 지급기준 충족일: 2023. 4. 12.
② 2023. 4월 근속수당 지급액: 24,960원(= 39,000원÷25일×16일)
※ 5월부터 월 39,000원 지급
③ 경력재산정일: 1. 1., 7. 1.
④ 만 2년 해당 근속수당 지급 시기: 2024. 7. 1.(신분변동없이 계속 근로 시)
- 2023. 4. 12.기준 근속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 2023. 4. 12. 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4월은 신분변동에 따라 39,000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7. 1. 자이므로 1. 1., 7. 1.
- 경력재산정일이 1. 1., 7. 1.이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2024. 6. 30.까지 지급 후 2024. 7. 1.에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으로 지급
(2024. 4. 12. 근속연수가 2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력재산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계속 지급)

3. [신규채용 - 1년미만 전임경력, 월중 신규채용]

조리실무사(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23. 5. 10.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채용 당시 전임경력 6개월(전임경력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① 근속수당 지급기준 충족일: 2023. 11. 10.
② 2023. 11월 근속수당 지급액: 27,000원(= 39,000원÷26일×18일)
※ 12월부터 월 39,000원 지급
③ 경력재산정일: 1. 1., 7. 1.
④ 만 2년 해당 근속수당 지급 시기: 2025. 1. 1.(신분변동없이 계속 근로 시)
- 2023. 11. 10.기준 근속수당(전임경력 포함)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 2023. 11. 10.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11월은 신분변동에 따라 39,000원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1. 1.자이므로 1. 1., 7. 1.
- 경력재산정일이 1. 1., 7. 1.이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2024. 12. 31.까지 지급 후 2025. 1. 1.에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으로 지급
(2024. 11. 10. 근속연수가 2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력재산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계속 지급)

4. [신규채용 - 1년이상 전임경력, 1일자 신규채용(대체)]

사서 대체(2022. 3. 1.~2023. 12. 31.) 신규채용(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채용 당시 전임경력 2년 8개월(전임경력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① 근속수당 지급기준 충족일: 2022. 3. 1.
② 2022. 3월부터 근속수당 지급액: 78,000원
③ 경력재산정일: 3. 1., 9. 1.
④ 만 3년 해당 근속수당 지급 시기: 2022. 9. 1.(신분변동없이 계속 근로 시)
- 2022. 3. 1.기준 근속수당(전임경력 포함) 지급 기준을 충족하여, 2022. 3. 1.부터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을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3. 1.자이므로 3. 1., 9. 1.
- 경력재산정일이 3. 1., 9. 1.이므로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2022. 8. 31.까지 지급 후 2022. 9. 1.에 만 3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으로 지급
(2022.7.1. 근속연수가 3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력재산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계속 지급)

예시 2018. 9. 1.~2021. 2. 28. 이전 근속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

(2018. 9. 1.)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산정일부터 지급

경력산정일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가 만1년 이상이 되고 최초 도래하는 일자(1.1, 3.1, 7.1, 9.1. 중 하루)

1. [신규채용 - 전임경력 없음, 1일자 신규채용]

행정실무사(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18. 4. 1.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채용 당시 전임경력 없음

①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산정일: 2019. 7.1.
② 2019.7월부터 근속수당 지급액: 32,500원
③ 경력재산정일: 1.1., 7. 1.
④ 만 2년 해당 근속수당 지급 시기: 2020. 7. 1.(신분변동없이 계속 근로 시)
- 2019. 4. 1. 기준 만 1년 근속연수가 충족하나, 경력산정일이 최초 도래하는 날이 2019. 7. 1. 이므로 2019.7.1.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7. 1.자 이므로 1. 1., 7. 1
- 경력재산정일이 1. 1., 7. 1.이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2020. 6. 30.까지 지급 후 2020. 7. 1.에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으로 지급
(2020.4.1. 근속연수가 2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력재산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계속 지급)

2. [신규채용 - 1년이상 전임경력, 1일자 신규채용]

행정실무사(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18. 9. 1.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채용 당시 전임경력 1년(전임경력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①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산정일: 2018. 9.1.
② 2018.9월부터 근속수당 지급액: 30,000원
③ 경력재산정일: 3.1., 9. 1.
④ 만 2년 해당 근속수당 지급 시기: 2019. 9. 1.(신분변동없이 계속 근로 시)
- 2018. 9. 1. 기준 근속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2018. 9. 1.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9. 1. 자이므로 3. 1., 9. 1
- 경력재산정일이 3. 1., 9. 1.이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2019. 8. 31.까지 지급 후 2019. 9. 1.에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으로 지급

3. [신규채용 - 1년이상 전임경력, 1일자 신규채용]

조리실무사(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18. 10. 1.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채용 당시 전임경력 2년(전임경력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①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산정일: 2019. 1.1.
② 2019.1월부터 근속수당 지급액: 65,000원
③ 경력재산정일: 1.1., 7. 1.
④ 만 3년 해당 근속수당 지급 시기: 2020. 1. 1.(신분변동없이 계속 근로 시)
- 2018. 10. 1. 기준 만 2년 근속연수가 충족하나, 경력산정일이 최초 도래하는 날이 2019. 1. 1. 이므로 2019.1.1.부터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1. 1.자 이므로 1. 1., 7. 1
- 경력재산정일이 1. 1., 7. 1.이므로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2019. 12. 31.까지 지급 후 2020. 1. 1.에 만 3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으로 지급

4. [신규채용 - 1년미만 전임경력, 1일자 신규채용]

영양사(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2018. 10. 1.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채용 당시전임경력 6개월(전임경력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①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산정일: 2019. 7.1.
② 2019.7월부터 근속수당 지급액: 32,500원
③ 경력재산정일: 1.1., 7. 1.
④ 만 1년 해당 근속수당 지급 시기: 2019. 7. 1.(신분변동없이 계속 근로 시)
- 2019. 4. 1. 기준 만 1년 근속연수가 충족하나, 경력산정일이 최초 도래하는 날이 2019. 7. 1. 이므로 2019.7.1.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7. 1.자 이므로 1. 1., 7. 1
- 경력재산정일이 1. 1., 7. 1.이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2020. 6. 30.까지 지급 후 2020. 7. 1.에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으로 지급
(2020.4.1. 근속연수가 2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력재산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계속 지급)

예시 휴직 · 복직이 있는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산정 및 지급

행정실무사(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최초채용일 2020. 3. 1. 전임경력 6개월(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육아휴직기간: 2023. 3. 1.~2024. 6. 30.(1년 4개월), 복직일: 2024. 7. 1.

[2025. 3. 1. 기준 교육공무직원 경력산정]

근무 경력						환산율	인정 경력		
기간		기관	년	월	일		년	월	일
부터	까지		5	6	0		5	2	0
2019-09-01	2020-02-29	전임경력(주40시간)	0	6	0	100%	0	6	0
현 근무지 경력							4	8	0
2020-03-01	2023-02-28	신규채용	3	0	0	100%	3	0	0
2023-03-01	2024-02-29	육아휴직 첫째	1	0	0	100%	1	0	0
2024-03-01	2024-06-30	육아휴직 첫째(연장)	0	4	0	0%	0	0	0
2024-07-01	2025-02-28	복직	0	8	0	100%	0	8	0

[근속수당 산정방법]

① 근속수당 지급기준 충족: 2020. 9월
② 2020.9월부터 근속수당 지급액: 35,000원
③ 경력재산정일: 3.1., 9. 1.
④ 만 1년 해당 근속수당 지급 시기: 2020. 9. 1.(신분변동없이 계속 근로 시)
- 2020. 9. 1. 기준 근속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2020. 9. 1.부터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경력재산정일은 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1. 1., 3. 1., 7. 1., 9. 1. 중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9. 1.자이므로 3. 1., 9. 1
- 경력재산정일이 3. 1., 9. 1.이므로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은 2021 8. 31.까지 지급 후 2021. 9. 1.에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으로 지급

[근속수당 지급방법]

- 2020. 9. 1. 만 1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2021. 9. 1. 만 2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2022. 9. 1. 만 3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2023. 3. 1 ~ 2024. 6. 30.근속지급 미지급
  (단, 2023.9.1. 만 4년에 해당하는 경력재산정 실시, 근속수당 미지급)
- 2024. 7. 1. 만 4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 2024. 9. 1. 만 4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2024. 9. 1.에 경력재산정일이 도래하였더라도 근속 미인정 휴직(4개월)이 포함되어 만 4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계속 지급)
- 2025. 3. 1. 만 5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지급 (2025.1.1. 근속연수가 5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력재산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만 5년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미지급)

참고 연도별 근속연수별 근속수당 월 지급액 (2011년~2016년)

(단위: 원)

근속년수	2011년	2012년 8월까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년이상	-	-	-	-	-	-	-
2년이상	-	-	-	-	-	-	-
3년이상	30,000	3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4년이상	30,000	30,000	50,000	50,000	57,000	70,000	70,000
5년이상	30,000	30,000	60,000	60,000	64,000	90,000	90,000
6년이상	40,000	40,000	60,000	60,000	71,000	110,000	110,000
7년이상	40,000	40,000	70,000	70,000	78,000	130,000	130,000
8년이상	40,000	40,000	70,000	70,000	85,000	150,000	150,000
9년이상	50,000	50,000	80,000	80,000	92,000	170,000	170,000
10년이상	50,000	50,000	80,000	80,000	99,000	190,000	190,000
11년이상	50,000	50,000	90,000	90,000	106,000	210,000	210,000
12년이상	60,000	60,000	90,000	90,000	113,000	230,000	230,000
13년이상	60,000	60,000	100,000	100,000	120,000	250,000	250,000
14년이상	60,000	60,000	100,000	100,000	127,000	250,000	270,000
15년이상	70,000	70,000	110,000	110,000	134,000	250,000	290,000
16년이상	70,000	70,000	110,000	110,000	141,000	250,000	310,000
17년이상	70,000	70,000	120,000	120,000	148,000	250,000	330,000
18년이상	80,000	80,000	120,000	120,000	155,000	250,000	350,000
19년이상	80,000	80,000	130,000	130,000	162,000	250,000	370,000
20년이상	80,000	80,000	130,000	130,000	162,000	250,000	390,000
21년이상	80,000	80,000	130,000	130,000	162,000	250,000	390,000
22년이상	80,000	80,000	130,000	130,000	162,000	250,000	390,000

참고 연도별 근속연수별 근속수당 월 지급액 (2017년~현재)

(단위: 원)

근속 년수	2017년 9월까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1월)부터	2022년 3월(1월)부터	2024년 3월(1월)부터
1년이상	-	30,000	32,500	34,000	35,000	39,000	39,000
2년이상	-	60,000	65,000	68,000	70,000	78,000	78,000
3년이상	50,000	90,000	97,500	102,000	105,000	117,000	117,000
4년이상	70,000	120,000	130,000	136,000	140,000	156,000	156,000
5년이상	90,000	150,000	162,500	170,000	175,000	195,000	195,000
6년이상	110,000	180,000	195,000	204,000	210,000	234,000	234,000
7년이상	130,000	210,000	227,500	238,000	245,000	273,000	273,000
8년이상	150,000	240,000	260,000	272,000	280,000	312,000	312,000
9년이상	170,000	270,000	292,500	306,000	315,000	351,000	351,000
10년이상	190,000	300,000	325,000	340,000	350,000	390,000	390,000
11년이상	210,000	330,000	357,500	374,000	385,000	429,000	429,000
12년이상	230,000	360,000	390,000	408,000	420,000	468,000	468,000
13년이상	250,000	390,000	422,500	442,000	455,000	507,000	507,000
14년이상	270,000	420,000	455,000	476,000	490,000	546,000	546,000
15년이상	290,000	450,000	487,500	510,000	525,000	585,000	585,000
16년이상	310,000	480,000	520,000	544,000	560,000	624,000	624,000
17년이상	330,000	510,000	552,500	578,000	595,000	663,000	663,000
18년이상	350,000	540,000	585,000	612,000	630,000	702,000	702,000
19년이상	370,000	570,000	617,500	646,000	665,000	741,000	741,000
20년이상	390,000	600,000	650,000	680,000	700,000	780,000	780,000
21년이상	390,000	600,000	650,000	680,000	700,000	819,000	819,000
22년이상	390,000	600,000	650,000	680,000	700,000	819,000	858,000

참고 근속수당 변천사

<table>
<tr><th rowspan="2">연도
(명칭)</th><th rowspan="2">지급 대상자</th><th colspan="2">경력산정시기</th></tr>
<tr><th>학교</th><th>기관</th></tr>
<tr><td>2011
(장기근무
가산금)</td><td>• 공통 적용대상자 중 2011.3.1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년수 3년 이상(현근무지 경력)인 자
(단, 한시적 대체근로자 및 용역(도급)근로자 등은 제외)</td><td>3.1.</td><td>1.1.</td></tr>
<tr><td>2012
(장기근무
가산금)</td><td>• 공통 적용대상자 중 2012.3.1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년수 3년 이상(경기도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인 자인 자 (기관 1월부터) (단, 한시적 대체근로자 및 용역(도급)근로자 등은 제외)</td><td>3.1.</td><td>1.1.</td></tr>
<tr><td>2013
(장기근무
가산금)</td><td>• 공통 적용대상자 중 2013.3.1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연수 3년 이상(경기도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인 자 (기관 2013.1.1. 현재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td><td>3.1.</td><td>1.1.</td></tr>
<tr><td>2014
(장기근무
가산금)</td><td>• 공통 적용대상자 중 2014.3.1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연수 3년 이상(경기도 및 타시도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인 자 (기관 2014.1.1. 현재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td><td>3.1.
/
9.1</td><td>1.1.
/
7.1.</td></tr>
<tr><td>2015
(장기근무
가산금)</td><td>• 교육공무직원으로 2015.3.1. 또는 9.1. 기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 중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중 근무경력이 만 3년 이상(경기도 및 타시도 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인 자(기관 1.1. 또는 7.1.기준)</td><td>3.1.
/
9.1</td><td>1.1.
/
7.1.</td></tr>
<tr><td>2016
(장기근무
가산금)</td><td>• 2016.1.1/3.1./7.1./9.1.기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근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경기도 및 타시도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 대체직 근로자 제외)</td><td colspan="2" rowspan="5">• 1.1. 또는 7.1.자로 대상이 된 경우
→ 1.1., 7.1.
• 3.1. 또는 9.1.자로 대상이 된 경우
→ 3.1., 9.1.</td></tr>
<tr><td>2017.9.
까지
(장기근무
가산금)</td><td>• 2017.1.1/3.1./7.1./9.1.기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근무경력이 만 3년 이상인 자
• (경기도 및 타시도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 대체직 근로자 제외)</td></tr>
<tr><td>2017.10. ~
(근속수당)</td><td>• 2018년 1.1, 3.1, 7.1, 9.1 기준으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면서 근속연수가 만 1년 이상인자
(경기도 및 타시도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 대체 근로자 지급 제외)</td></tr>
<tr><td>2018.9. ~
(근속수당)
2019
(근속수당)
2020
(근속수당)</td><td>• 지급직종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속연수 만 1년 이상인 자
(경기도 및 타시도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 대체 근로자도 근속수당 지급)
▸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최초 도래하는 경력산정일(1.1./3.1./7.1./9.1.)부터 지급
▸ 2018.9.1. 이후 새로이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 주 소정근로 시간 비례 지급
▸ 2020년 5월 이후부터 국립학교(유,초,중,고,특수) 경력인정</td></tr>
<tr><td>2021.3. ~
(근속수당)</td><td>• 지급직종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근속연수 만 1년 이상인 자
(경기도 및 타시도교육감 소속 전임경력 포함, 대체 근로자도 근속수당 지급)
▸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지급(202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월 중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할계산</td><td colspan="2" rowspan="2">지급 기준을 충족하고
•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1.1. 또는 7.1.자인 경우
→ 1.1., 7.1.
• 최초 도래하는 일자가 3.1. 또는 9.1.자인 경우
→ 3.1., 9.1.</td></tr>
<tr><td>2023.5.2. ~
(근속수당)</td><td>• 경력인정 휴직 중 경력산정 및 경력재산정 실시</td></tr>
</table>

다. 정기상여금

구분	내용
지급대상	• 3-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고 1, 8월 보수지급일(17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보수지급일이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서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하더라도 당초 보수지급일(17일)을 기준으로 함)
지급단위	• 매년 2회(1, 8월)
지급방법	• 지급일에 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 전액 지급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지급금액	• 연 100만원(1월 50만원, 8월 50만원) *특수운영직군 연 50만원
지급요건	• 계속근로 ▸ 신규채용절차(공개채용, 인력풀 등)를 거쳐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지급일 이전 3개월"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 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재직자: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지급 제외(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의 경우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지급)

참고 정기상여금 연도별 지급 현황

연도	지급액 [1, 8월 균분 지급]	연도	지급액 [1, 8월 균분 지급]
2016[1]	연 50만원	2020	연 90만원
2017	연 60만원	2021	연 90만원
2018. 8월까지	연 60만원	2022[3]	연 100만원 특수운영직군: 연 50만원
2018. 9월부터[2]	연 60만원	2023	연 100만원 특수운영직군: 연 50만원
2019	연 90만원	2024	연 100만원 특수운영직군: 연 50만원

1) 2016년 정기상여금 신설
2) 2018.9.1.이후 새로이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3) 2022년 특수운수운영직군 신설: 시간 비례미적용(단시간근로자도 동일 지급, 연 50만원)

라. 가족수당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3-가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지급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신청에 의한 지급)
지급 방법	• 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 • 2023. 4. 25.이후 가족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경우 소급 가능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 전액 지급 •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지급 • 신분 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일할계산 •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 초과 등)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은 전액 지급 ▸ 특수운영직군은 2024년 회계연도(기관: 2024.1월, 학교: 2024.3월)부터 시행
지급 금액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배우자: 월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20,000원 ▸ 자녀: 첫째-월3만원, 둘째-월7만원, 셋째 이후-월11만원 ▸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지급 단위	• 매월
신청 방법	• 부양가족이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학교)장에게 제출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공무원이거나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교육공무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명시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기 신고한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 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교육공무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2. 교육공무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단,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 등에 따라 ① 해당 교육공무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4명을 넘을 수 없으나 자녀를 포함할 경우 4명 초과 가능 ☞ 예: 부모+배우자+자녀 3명 부양가족 6명 가능)

예시 가족수당 소급

2023. 4. 25.이후 가족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경우 소급 가능

- 2022. 3. 1.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2023. 2. 14. 부양가족 변동(출생), 2024. 1. 1. 부양가족 신고서 제출: 2023.4월부터 소급 지급 (2023.2월부터 3월은 소급 불가)
- 2023. 3. 1.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2023. 7. 3. 부양가족 변경(결혼), 2024. 1. 1. 부양가족 신고서 제출: 2023.7월부터 소급 지급

1) 지급대상 제외

- 배우자가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가족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를 보조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 상 동일 세대 내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육공무직원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 교육공무직원의 형제 · 자매가 교육공무직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게만 지급

2) 부당수령금지

- 교육공무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 받은 수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 공무직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음(고의 또는 중과실 정도를 판단 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음)

마. 명절휴가비

구분	내용
지급 대상	• 3-가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명절일 당일 포함) 계속 근로한 재직자(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자 포함)
지급 단위	• 설날, 추석(학교, 기관: 2024년 설부터 적용)
지급 방법	• 지급기준 충족 시 전액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이 속한 달 전액 지급 • 2018. 9. 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
지급 금액	• 연 170만원(설 85만원, 추석 85만원)
지급 요건	1. 계속 근로 ▸ 신규채용절차(공개채용, 인력풀 등)를 거쳐 동일 기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명절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정직 또는 휴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단, 육아휴직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1년에 한함), 노조전임휴직자가 복직하여 지급기준일(명절일) 당시 재직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명절휴가비에 한하여 예외적 지급(그 외의 휴직 후 복직 시 미지급) 2. 재직자: 지급일 기준 휴직자는 지급 제외 (휴가, 병가, 출산휴가 등의 경우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지급) 3.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 정년퇴직 후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되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명절일 기준 1개월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①, ②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① 기간제 근로자의 최초 근무시작일은 정년퇴직일과 동일 ②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지는 정년퇴직 전 근무지와 동일 ▸ 적용일: 2023. 9. 1.자 정년 퇴직자부터

예시 **명절휴가비 지급**

1. 명절(설날)일: 2024. 2. 10. 일 때,
▸ 2024. 1. 11. ~ 2024. 2. 10.(명절일 당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

2. 명절(추석)일: 2024. 9. 17. 일 때,
▸ 2024. 8. 18. ~ 2024. 9. 17.(명절일 당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

3. 2018. 9. 1. 채용된 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인 시설당직원의 2024년 1월 설날 명절휴가비 지급 금액은?
→ 지급 금액: 765,000원(850,000원×36시간÷40시간)

참고 명절휴가비 연도별 지급 현황

<table>
<tr><th>연도</th><th>지급액
[설, 추석 균분 지급]</th><th>지급 대상</th></tr>
<tr><td>2011</td><td>연 20만원</td><td>• 근로계약 1년 이상 체결자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단, 한시적 대체근로자 및 용역(도급)근로자 등은 제외</td></tr>
<tr><td>2012</td><td rowspan="4">연 40만원</td><td rowspan="4">• (범위 확대) 지급기준일 현재(설날, 추석) 재직자로서 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 단, 한시적 · 대체근로자 및 용역(도급)근로자 등은 제외
• 휴직자(육아, 간병, 질병)의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td></tr>
<tr><td>2013</td></tr>
<tr><td>2014</td></tr>
<tr><td>2015</td></tr>
<tr><td>2016</td><td rowspan="2">연 70만원</td><td rowspan="2">•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명절 2017 당시 재직 중이면 지급</td></tr>
<tr><td>2017</td></tr>
<tr><td>2018</td><td rowspan="3">연 100만원</td><td>•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재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자 포함)
※ 계약기간 및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자도 지급 가능</td></tr>
<tr><td>2019</td><td rowspan="6">• 지급 직종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으로서 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 해당하고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중인 자 포함)
• 2018.9.1. 이후 새로이 각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비례 지급</td></tr>
<tr><td>2020</td></tr>
<tr><td>2021</td><td>연 120만원
(2021년 설부터 적용)</td></tr>
<tr><td>2022</td><td>연 140만원
(2022년 설부터 적용)</td></tr>
<tr><td>2023</td><td>연 160만원
(2023년 설부터 적용)</td></tr>
<tr><td>2024</td><td>연 170만원
(2024년 설부터 적용)</td></tr>
</table>

바. 맞춤형복지비

○ 「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제도 업무처리 지침」참고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 rowspan="2">지급 대상</td><td>[맞춤형복지포털 이용 대상]
•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재직 중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 중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을 교특회계로 지원받는 교육공무직원
• 지방공무원결원대체
• 체육코치(일반, 전임)
※ 휴직자: 2015.2.28.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자녀당 최초 1년)・질병・간병 휴직 시 맞춤형 복지비 지급
<table>
<tr><th>구분</th><th>인정기간</th><th>인사변동 ‘휴직’처리</th><th>복지점수배정</th></tr>
<tr><td>휴직자</td><td>지급 대상 제외</td><td>○</td><td>×</td></tr>
<tr><td colspan="2">단, 2015.2.28.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자녀당 최초1년)・질병・간병 휴직 시</td><td>×</td><td>○</td></tr>
</table></td></tr>
<tr><td>[기관 자체예산 및 학교회계에서 지급]
•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시설경비원, 시설안내원, 전화상담원)은 기존 방법 및 지급 방법 유지</td></tr>
<tr><td>사용 기간</td><td>• 청구 마감일 (카드 청구: 11.30., 영수증 청구: 12.23.)</td></tr>
<tr><td>지급 방법</td><td>•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달부터 배정액 산정
•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시 월할 계산
※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 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
※ 월할계산 방법
• (맞춤형복지비)÷12월×(복지점수 부여 사유가 있는 달= 실제 근무한 달)
• 단, 휴직 / 퇴직 / 정직 등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일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에서 제외)
• 동일한 월에 퇴직한 후 재채용된 경우: 중복하지 않고 1월로 계산</td></tr>
<tr><td>지급 금액</td><td>• 기본 복지점수 연 800포인트 + 건강검진비(격년 200점 이내) (1포인트=1,000원)
※ 기본점수: (기관) 1월 1일 / (학교) 3월 1일 회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
※ 건강검진비: (기관, 학교) 1월 1일 기준 당해연도 적용 (단, 채용일 이전 기실시한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td></tr>
</table>

구분	내용
건강 검진비	• 교육공무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중대질환(각종 암, 뇌혈관 질환 등)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2년을 주기로 1인당 200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으로 2024.12.31.기준 만40세 이상 (1984.12.31.이전 짝수년도 출생자) ※ 퇴직자는 재직 기간 내에 신청 가능 • 지원금액: 1인당 200점(20만원) 이내 실제 청구액 ▸ 신분 변동 등에 따른 차감 없이 전액 지원(월할 지급 아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상의 보인 부담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건강검진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사용 용도: 교육공무직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특정 질병의 진료 및 치료 등 검진 목적에 맞지 않게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제외 (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으로 절대 사용 불가) *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에서 건강검진 • 제출 서류: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진료비 영수증) • 배정방법: 복지점수관리> 복지점수 조정> 조정사유 '건강검진' 배정 ▸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더라도 서류는 가급적 일괄 제출
사용 방법	• 맞춤형복지포털 > 복지점수 청구(카드, 영수증 청구 등) ※ 맞춤형복지비 부여기간 중 사용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 (해당 서류 보관하여야 함) ※ 단,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및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이전에 교육공무직원이 사용・신청하여 청구(지급)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 (미사용으로 인한 불용처리 방지)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 교육공무직원이 신청한 금액을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 지급이 불가할 경우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학교(기관)에서 보관 (단, 근로계약기간이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각의 회계연도 단위로 처리)
사용가능 항목	• 자율항목(자율항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참조)
사용불가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상품권(온누리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주유권・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세금 납부 등

○ 자율항목의 구성

분야	자율항목
건강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교육공무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교육공무직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교육공무직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 보육시설・노인복지지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음

참고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지급 현황

연도	지급포인트	연도	지급포인트
2010	연 150P	2017	연 400P
2011	연 300P	2018	연 500P
2012	연 300P	2019	연 700P
2013	연 350P	2020	연 700P
2014	연 350P	2021	연 700P
2015	연 350P	2022	연 700P (건강검진비 신설: 만 40세이상 격년 연 200P 상한)
2016	연 350P	2023	연 800P (건강검진비 신설 : 만 40세이상 격년 연 200P 상한)

5 직무관련수당

직무관련수당은 사업부서 별도 계획에 따름

직종	직무관련수당	지급금액
• 사서 • 교육복지사 • 교육복지조정자	특수업무수당	매월 20,000원
• 행정실무사(중・고・특수 세입담당자) • 구육성회직원*	관리수당 (특수업무수당)	매월 30,000원
•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매월 109,300원 (기본급의 5%)
	위험관리수당	매월 50,000원
	기술정보수당**	매월 20,000원
• 조리사	면허수당	매월 99,300원 (기본급의 5%)
	위험수당	매월 50,000원
• 조리실무사	위험수당	매월 50,000원

* 구육성회직원은 관리수당 대신에 특수업무수당(월 3만원) 지급 (관리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 영양사가 2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영양사 1명을 지정하여 직책급인 면허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영양사에게는 기존 기술정보수당(월 2만원) 지급 유지

6 주휴수당 지급방법

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해당 기간 중 결근이 없는 것)
- 한 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될 것

※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요건 충족 시 7일에 1회씩 주휴 부여 (노사협력과-6146(2021.8.1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참조)

나.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 여부 판단 기준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판단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 4주 이상 계약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판단
  - 4주 미만 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 판단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판단

202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6시간	2
3	4 6시간	5	6 6시간	7	8 6시간	9
10	11	12 6시간	13	14 6시간	15	16
17	18 6시간	19	20 6시간	21	22 6시간	23
24	25	26 6시간	27	28 6시간	29	30

- **11/1(금)~11/30(토)까지 1주 18시간, 1주 12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1. 4주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18+12+18+12)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60/4)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발생)

202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5시간	2
3	4 5시간	5	6 5시간	7	8 5시간	9
10	11	12 5시간	13	14 5시간	15	16
17	18 5시간	19	20 5시간	21	22 5시간	23
24	25	26 5시간	27	28 5시간	29	30

- **11/1(금)~11/30(토)까지 1주 15시간, 1주 1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1. 4주간 소정근로시간: 50시간 (15+10+15+10)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2.5시간 (50/4)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미발생)

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판단 기준

- 1주 '개근'이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근무시간 중 지각, 조퇴, 외출을 하더라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
- 휴가(무급휴가 포함) 사용과 적법한 쟁의행위(파업) 참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
-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 발생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판단

2024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주휴 발생	4 8시간	5 8시간	6 8시간	7 8시간	8 8시간	9
10 주휴 발생	11 8시간	12 8시간	13 8시간	14 8시간	15 8시간	16
17 주휴 발생	18 8시간	19 조퇴 2시간	20 8시간	21 8시간	22 8시간	23
24 주휴 발생	25 8시간	26 8시간	27 8시간	28 8시간	29 8시간	30
31 주휴 발생						

- 2024.3.1. 행정실무사 신규채용, 전임 경력 없음, 직무관련수당 없음, 2024.3.19.(화) 2시간 조퇴
  → 3월 24일(일) 주휴수당 발생
  1. 근무시간 중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 연차 발생 전 조퇴를 사용하였으므로 급여에서 조퇴 사용시간 만큼 통상임금 공제
  2. 3월 결근하지 않았으므로 2024.4.1. 연차(1일) 발생
  3. 주중 유급휴일(3.1.)이 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4. 3월 급여 계산: 2,115,560원 지급 = (1,986,000+150,000)−(10,220원*×2시간)

  *(1,986,000+150,000)÷209=10,220원

2024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삼일절	2
3 주휴 발생	4 8시간	5 8시간	6 8시간	7 8시간	8 8시간	9
10 주휴 발생	11 8시간	12 8시간	13 8시간	14 8시간	15 8시간	16
17 주휴 발생	18 8시간	19 결근	20 8시간	21 8시간	22 8시간	23
24 주휴 미발생	25 8시간	26 8시간	27 8시간	28 8시간	29 8시간	30
31 주휴 발생						

- 2024.3.1. 행정실무사 신규채용, 전임 경력 없음, 직무관련수당 없음, 2024.3.19.(화) 1일 결근
  → 3월 24일(일) 주휴수당 미발생
  1.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24일 주휴수당 미발생
  2. 통상임금 2일(=19일 결근일+24일 주휴수당) 공제
  3. 주중 유급휴일(3.1.)이 있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4. 3월중 결근으로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2024.4.1. 연차(1일) 미발생
  5. 3월 급여 계산: 1,972,480원 지급 = (1,986,000+150,000)−(10,220원*×16시간)

  *(1,986,000+150,000)÷209=10,220원

라. 한 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판단 기준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을 의미

설명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수~그 다음 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수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한 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 여부 판단

202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	11 8시간	12 8시간	13 8시간	14 8시간	15 8시간	16
17 주휴 미발생	18	19	20	21	22	23

1. 11/11(월)~11/15(금)까지 근로계약 한 경우
   → 11.17. 주휴수당 미발생
   ※ 1주(7일) 미만 근로관계 유지→주휴수당 미발생

202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	11 8시간	12 8시간	13 8시간	14 8시간	15 8시간	16
17 주휴 발생	18	19	20	21	22	23

2. 11/11(월)~11/17(일)까지 근로계약 한 경우
   → 11.17. 주휴수당 발생
   ※ 1주(7일) 근로관계 유지→주휴수당 발생

202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4 8시간	15 8시간	16
17 주휴 발생	18 8시간	19 8시간	20 8시간	21	22	23

3. 11/14(목)~11/20(수)까지 근로계약 한 경우
   → 11.17. 주휴수당 발생
   ※ 1주(7일) 근로관계 유지→주휴수당 발생

202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4 8시간	15 8시간	16
17 주휴 발생	18 8시간	19 8시간	20 8시간	21 8시간	22 8시간	23
24 주휴 발생	25 8시간	26 8시간	27 8시간	28	29	30

4. 11/14(목)~11/27(수)까지 근로계약 한 경우

1주(7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2일 발생 (11.17., 11.24.)

2024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 8시간	11 8시간	12
13 주휴 미발생	14 8시간	15 8시간	16	17	18 8시간	19
20 주휴 미발생	21	22 8시간	23 8시간	24 8시간	25 8시간	26
27 주휴 발생	28 8시간	29 8시간	30 8시간	31 8시간		

5. 10.10.(목)~10.15.(화)까지 조리실무사 대체직 근무 후 근로관계 종료, 새로운 채용사유 발생으로 10.18.(금) 조리실무사 대체직 근무 후 근로관계 종료, 새로운 채용사유 발생으로 10.22.(화)~10.31.(목)까지 조리실무사 대체직 근무 후 근로관계 종료

- 10.10.~10.15. 1주(7일) 미만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미발생
- 10.18. 1주(7일) 미만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미발생
- 10.22.~10.31. 1주(7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발생

마. 주휴수당 산정 방법

1) 월급제

-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 전액 지급 (추가 지급 불필요)

2) 시급제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미발생
- 계약기간 1개월 미만(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한함)
  -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단가) 추가 지급

*1일 소정근로시간: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 일수(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 수

주휴수당 산정 방법

202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6시간	2
3 주휴 발생	4 6시간	5 6시간	6 6시간	7 6시간	8 6시간	9
10 주휴 발생	11 6시간	12 6시간	13 6시간	14 6시간	15 6시간	16
17 주휴 발생	18 6시간	19 6시간	20 6시간	21 6시간	22 6시간	23
24 주휴 발생	25 6시간	26 6시간	27 6시간	28 6시간	29 6시간	30

- 11/1(금)~11/30(토)까지 1주 3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1.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 전액 지급(추가 지급 불필요)

2024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시간	5	6 5시간	7	8 5시간	9
10 주휴 발생	11 5시간	12	13 5시간	14	15 5시간	16
17 주휴 발생	18 5시간	19	20 5시간	21	22 5시간	23
24	25	26	27	28	29	30

- 11/4(월)~11/22(금)까지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1. 계약기간 총 근로시간: 45시간 (15+15+15)
  2.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15일
  3. 1일 소정근로시간: 45시간/15일=3시간
  4. 주휴수당(1일분): 37,350원 (=3시간×12,500원(생활임금 시간급))

질의응답-주휴수당 산정방법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교육공무직원이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 부지급
   -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교육공무직원이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 연장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함

3. 학기 중과 방학 중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 학기 중 주휴수당은 학기 중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고, 방학 중 주휴수당은 방학 중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금요일이 방학식인 경우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인정되는 유급일'은 학기 중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

7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

가. 연장근로수당

1)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2) 지급방법

- 연장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연장근로한 경우 근로분은 추가 지급하나 가산분 (통상임금의 50%)은 미적용
-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날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근로분은 추가 지급하나 가산분(통상임금의 50%)은 미적용
- 연장근로시간은 분 단위 절사하지 않고 지급

나. 야간근로수당

1) 야간근로: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로

2) 지급방법

- 야간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도 야간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일지라도 야간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의 50%+50% 가산하여 지급
- 야간근로가 휴일근로와 중복될 경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의 50%+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 초과의 휴일근로가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의 100%+50%를 가산하여 지급

다. 휴일근로수당

1) 휴일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

2) 지급방법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휴일의 적용이 없음. 단,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근로분은 추가 지급하나 가산분(통상임금의 50%)은 미적용

월급제 근로자의 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 지급 방법

구분		임금 지급 방법	비고
비근무		월급 전액 지급	월급에 유급분 포함
근무	8시간 이내	월급 전액 지급 +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통상임금 50%)	월급액 +(휴일근로시간 ×시간급 통상임금×1.5)
	8시간 초과	월급 전액 지급 +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분(통상임금 100%)	월급액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시간급 통상임금×1.5)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시간급 통상임금×2)

예시 유급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교육공무직원이 휴일에 10:00~16:30(휴게시간: 12:00~12:30)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방법은?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 150%
  : 근로시간 6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통상임금의 150%

예시 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 지급

<table>
<tr><td>근로시간</td><td colspan="3">• 근로시간: 09:00~23:00 (휴일근로)
• 휴게시간: 12:00~13:00, 18:00~18:30 (무급)
• 시간급 통상임금: 10,000원</td></tr>
<tr><td>휴일·야간 근로시간 산정</td><td colspan="3">• 휴일근로시간: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제외)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4.5시간 (18:00~23:00 휴게시간 30분 제외)
• 야간근로시간: 1시간 (22:00~23:00)</td></tr>
<tr><td rowspan="3">임금 지급방법</td><td rowspan="2">휴일 근로</td><td>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td><td>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td></tr>
<tr><td>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td><td>10,000원 × 4.5시간 × 200% = 90,000원</td></tr>
<tr><td colspan="2">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td><td>10,000원 × 1시간 × 50% = 5,000원</td></tr>
<tr><td colspan="2">합계</td><td>215,000원</td></tr>
</table>

라.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한 경우 임금 지급 방법

1)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자의 동의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경우

- 휴일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근무일(예: 방학 중 청소일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방학 중 근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

2) 지급방법

-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79조제2항)
- 근로분(통상임금의 100%) + 가산분(통상임금의 50%)
  - 상시근무자 또는 방학 중 근무자가 학기 중 비근무일(예: 토요휴무일 등)에 근로한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
  - 단,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근무일이 아닌 날 근로한 경우(예: 방학 중 근무일 초과)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되 근로분(통상임금의 100%)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제외, 가산분(통상임금의 50%)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포함하여 산정

3) 휴일근로와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의 비교

구분	휴일근로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
수당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 8시간 이내 휴일근로:통상임금1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통상임금200%	근로일 아닌 날에 근로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49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예시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한 경우

2024. 8. 5.(월) ~ 8. 9.(금) 방학 중 비근무자가 방학 중 근무일이 아닌 날 근로한 경우

2024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임금 지급방법: 근로분(통상임금의 100%) + 가산분(통상임금의 50%)

- 근로분(통상임금의 100%)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제외
- 가산분(통상임금의 50%)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포함하여 산정

예시 휴일근로와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의 비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8시간, 월~금 주5일 근무)인 교육공무직원이 토요일(휴무일)과 일요일(휴일)에 각각 9:00~21:00(휴게시간 12:00~13:00) 근로하였을 경우 수당 지급 방법은?

→ 토요일 근로(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

- 8시간 초과 근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 근로시간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간급 통상임금×1.5

→ 일요일 근로(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 100%를 가산하여 지급
  : [근로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시간급 통상임금×1.5] + [근로시간 3시간×시간급 통상임금×2]

8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의 종료 또는 퇴직 시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나. 재직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 지급시기: 사용기간 종료 다음 날 청구권 발생

2) 지급방법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사용기간의 마지막 달 기준 통상임금

다.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 지급방법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마지막 근무일(퇴직일 전일)이 속한 달 통상임금

-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기관 1.1.~12.31., 학교 3.1.~다음해 2월 말일)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단,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정산(추가 지급)해야 함)

라. 휴직 · 복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 지급시기: 사용기간 종료 다음 날 청구권 발생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 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종료 다음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2) 지급방법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사용기간의 마지막 달 기준 통상임금

  ※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중 휴직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기간의 마지막 달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

예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1)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2024.3.1.~2024.8.31. 6개월 대체직,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4-03-31	개근	2024-04-01	1	2024-04-01	2024-08-31	0	2024-09-14
2024-04-01	2024-04-30	개근	2024-05-01	1	2024-05-01	2024-08-31	0	2024-09-14
2024-05-01	2024-05-31	개근	2024-06-01	1	2024-06-01	2024-08-31	1	2024-09-14
2024-06-01	2024-06-30	개근	2024-07-01	1	2024-07-01	2024-08-31	0	2024-09-14
2024-07-01	2024-07-31	개근	2024-08-01	1	2024-08-01	2024-08-31	0	2024-09-14
2024-08-01	2024-08-31	개근	미발생*	0	-	-	0	-
합계				5			1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2024.8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 × 4일(=5일-1일)

  * 미발생: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발생

  ※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2024.3.15.~2024.9.14. 6개월 대체직,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15	2024-04-14	개근	2024-04-15	1	2024-04-15	2024-09-14	0	2024-09-28
2024-04-15	2024-05-14	개근	2024-05-15	1	2024-05-15	2024-09-14	0	2024-09-28
2024-05-15	2024-06-14	개근	2024-06-15	1	2024-06-15	2024-09-14	1	2024-09-28
2024-06-15	2024-07-14	개근	2024-07-15	1	2024-07-15	2024-09-14	0	2024-09-28
2024-07-15	2024-08-14	개근	2024-08-15	1	2024-08-15	2024-09-14	0	2024-09-28
2024-08-15	2024-09-14	개근	미발생*	0	-	-	0	-
합계				5			1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2024.9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 × 4일(=5일-1일)

3.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2024.3.1.~2024.8.31. 6개월 대체직,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2024.7.27.~8.20.)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4-03-31	개근	2024-04-01	1	2024-04-01	2024-08-31	0	2024-09-14
2024-04-01	2024-04-30	개근	2024-05-01	1	2024-05-01	2024-08-31	1	2024-09-14
2024-05-01	2024-05-31	개근	2024-06-01	1	2024-06-01	2024-08-31	0	2024-09-14
2024-06-01	2024-06-30	개근	2024-07-01	1	2024-07-01	2024-08-31	0	2024-09-14
2024-07-01	2024-07-31	개근	2024-08-01	1	2024-08-01	2024-08-31	0	2024-09-14
2024-08-01	2024-08-31	개근	미발생*, 미발생**	0	-	-	0	-
합계				5			1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2024.8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 × 4일(=5일-1일)
**미발생: 월중 15일 이상 방학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발생

4.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2024.3.15.~2024.9.14. 6개월 대체직,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2024.7.27.~8.20.)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15	2024-04-14	개근	2024-04-15	1	2024-04-15	2024-09-14	0	2024-09-28
2024-04-15	2024-05-14	개근	2024-05-15	1	2024-05-15	2024-09-14	1	2024-09-28
2024-05-15	2024-06-14	개근	2024-06-15	1	2024-06-15	2024-09-14	0	2024-09-28
2024-06-15	2024-07-14	개근	2024-07-15	1	2024-07-15	2024-09-14	0	2024-09-28
2024-07-15	2024-08-14	개근	미발생**	0	-	-	0	-
2024-08-15	2024-09-14	개근	미발생*	0	-	-	0	-
합계				4			1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2024.9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 × 3일(=4일-1일)

예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2)

1. 계속근로기간 1년(2024.3.1. 신규채용,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4-03-31	개근	2024-04-01	1	2024-04-01	2025-02-28	0	2025-03-01
2024-04-01	2024-04-30	개근	2024-05-01	1	2024-05-01	2025-02-28	0	2025-03-01
2024-05-01	2024-05-31	개근	2024-06-01	1	2024-06-01	2025-02-28	1	2025-03-01
2024-06-01	2024-06-30	개근	2024-07-01	1	2024-07-01	2025-02-28	0	2025-03-01
2024-07-01	2024-07-31	개근	2024-08-01	1	2024-08-01	2025-02-28	0	2025-03-01
2024-08-01	2024-08-31	개근	2024-09-01	1	2024-09-01	2025-02-28	3	2025-03-01
2024-09-01	2024-09-30	개근	2024-10-01	1	2024-10-01	2025-02-28	0	2025-03-01
2024-10-01	2024-10-31	개근	2024-11-01	1	2024-11-01	2025-02-28	0	2025-03-01
2024-11-01	2024-11-30	개근	2024-12-01	1	2024-12-01	2025-02-28	0	2025-03-01
2024-12-01	2024-12-31	개근	2025-01-01	1	2025-01-01	2025-02-28	2	2025-03-01
2025-01-01	2025-01-31	개근	2025-02-01	1	2025-02-01	2025-02-28	0	2025-03-01
2025-02-01	2025-02-28	개근	미발생*	0	-	-	-	-
합계				11			6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2025.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 × 5일(=11일-6일)

2. 계속근로기간 1년(2024.3.15. 신규채용,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15	2024-04-14	개근	2024-04-15	1	2024-04-15	2025-03-14	0	2025-03-15
2024-04-15	2024-05-14	개근	2024-05-15	1	2024-05-15	2025-03-14	0	2025-03-15
2024-05-15	2024-06-14	개근	2024-06-15	1	2024-06-15	2025-03-14	1	2025-03-15
2024-06-15	2024-07-14	개근	2024-07-15	1	2024-07-15	2025-03-14	0	2025-03-15
2024-07-15	2024-08-14	개근	2024-08-15	1	2024-08-15	2025-03-14	0	2025-03-15
2024-08-15	2024-09-14	개근	2024-09-15	1	2024-09-15	2025-03-14	3	2025-03-15
2024-09-15	2024-10-14	개근	2024-10-15	1	2024-10-15	2025-03-14	0	2025-03-15
2024-10-15	2024-11-14	개근	2024-11-15	1	2024-11-15	2025-03-14	0	2025-03-15
2024-11-15	2024-12-14	개근	2024-12-15	1	2024-12-15	2025-03-14	0	2025-03-15
2024-12-15	2025-01-14	개근	2025-01-15	1	2025-01-15	2025-03-14	2	2025-03-15
2025-01-15	2025-02-14	개근	2025-02-15	1	2025-02-15	2025-03-14	0	2025-03-15
2025-02-15	2025-03-14	개근	미발생*	0	-	-	-	-
합계				11			6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2025.3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 × 5일(=11일-6일)

3. 계속근로기간 1년(2024.3.1. 신규채용,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2024.7.27.~8.20., 2025.1.4.~2.28.)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4-03-31	개근	2024-04-01	1	2024-04-01	2025-02-28	0	2025-03-01
2024-04-01	2024-04-30	개근	2024-05-01	1	2024-05-01	2025-02-28	1	2025-03-01
2024-05-01	2024-05-31	개근	2024-06-01	1	2024-06-01	2025-02-28	0	2025-03-01
2024-06-01	2024-06-30	개근	2024-07-01	1	2024-07-01	2025-02-28	0	2025-03-01
2024-07-01	2024-07-31	개근	2024-08-01	1	2024-08-01	2025-02-28	0	2025-03-01
2024-08-01	2024-08-31	개근	미발생**	0	-	-	3	-
2024-09-01	2024-09-30	개근	2024-10-01	1	2024-10-01	2025-02-28	0	2025-03-01
2024-10-01	2024-10-31	개근	2024-11-01	1	2024-11-01	2025-02-28	0	2025-03-01
2024-11-01	2024-11-30	개근	2024-12-01	1	2024-12-01	2025-02-28	0	2025-03-01
2024-12-01	2024-12-31	개근	2025-01-01	1	2025-01-01	2025-02-28	2	2025-03-01
2025-01-01	2025-01-31	개근	미발생**	0	-	-	0	-
2025-02-01	2025-02-28	개근	미발생*, 미발생**	0	-	-	-	-
합계				9			6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2025.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 × 3일(=9일-6일)

4. 계속근로기간 1년(2024.3.15. 신규채용,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2024.7.27.~8.20., 2025.1.4.~2.28.)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15	2024-04-14	개근	2024-04-15	1	2024-04-15	2025-03-14	0	2025-03-15
2024-04-15	2024-05-14	개근	2024-05-15	1	2024-05-15	2025-03-14	1	2025-03-15
2024-05-15	2024-06-14	개근	2024-06-15	1	2024-06-15	2025-03-14	0	2025-03-15
2024-06-15	2024-07-14	개근	2024-07-15	1	2024-07-15	2025-03-14	0	2025-03-15
2024-07-15	2024-08-14	개근	미발생**	0	-	-	3	-
2024-08-15	2024-09-14	개근	2024-09-15	1	2024-09-15	2025-03-14	0	2025-03-15
2024-09-15	2024-10-14	개근	2024-10-15	1	2024-10-15	2025-03-14	0	2025-03-15
2024-10-15	2024-11-14	개근	2024-11-15	1	2024-11-15	2025-03-14	0	2025-03-15
2024-11-15	2024-12-14	개근	2024-12-15	1	2024-12-15	2025-03-14	0	2025-03-15
2024-12-15	2025-01-14	개근	2025-01-15	1	2025-01-15	2025-03-14	2	2025-03-15
2025-01-15	2025-02-14	개근	미발생**	0	-	-	0	-
2025-02-15	2025-03-14	개근	미발생*	0	-	-	-	-
합계				9			6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2025.3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 × 3일(=9일-6일)

예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3)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2024.3.1. 신규채용,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4-03-31	개근	2024-04-01	1	2024-04-01	2025-02-28	0	2025-03-01
2024-04-01	2024-04-30	개근	2024-05-01	1	2024-05-01	2025-02-28	0	2025-03-01
2024-05-01	2024-05-31	개근	2024-06-01	1	2024-06-01	2025-02-28	1	2025-03-01
2024-06-01	2024-06-30	개근	2024-07-01	1	2024-07-01	2025-02-28	0	2025-03-01
2024-07-01	2024-07-31	개근	2024-08-01	1	2024-08-01	2025-02-28	0	2025-03-01
2024-08-01	2024-08-31	개근	2024-09-01	1	2024-09-01	2025-02-28	3	2025-03-01
2024-09-01	2024-09-30	개근	2024-10-01	1	2024-10-01	2025-02-28	0	2025-03-01
2024-10-01	2024-10-31	개근	2024-11-01	1	2024-11-01	2025-02-28	0	2025-03-01
2024-11-01	2024-11-30	개근	2024-12-01	1	2024-12-01	2025-02-28	0	2025-03-01
2024-12-01	2024-12-31	개근	2025-01-01	1	2025-01-01	2025-02-28	2	2025-03-01
2025-01-01	2025-01-31	개근	2025-02-01	1	2025-02-01	2025-02-28	0	2025-03-01
2025-02-01	2025-02-28	개근	미발생	0	-	-	-	-
합계				11			6	

근무기간		발생 요건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5-02-28	80%이상 출근	2025-03-01	15	2025-03-01	2026-02-28	5	2026-03-01
2025-03-01	2026-02-28	80%이상 출근	2026-03-01	15	2026-03-01	2027-02-28	4	2027-03-01
2026-03-01	2027-02-28	80%이상 출근	2027-03-01	16	2027-03-01	2028-02-29	5	2028-03-01
2027-03-01	2028-02-29	80%이상 출근	2028-03-01	16	2028-03-01	2029-02-28	4	2029-03-01
2028-03-01	2029-02-28	80%이상 출근	2029-03-01	17	2029-03-01	2030-02-28	5	2030-03-01
2029-03-01	2030-02-28	80%이상 출근	2030-03-01	17	2030-03-01	2031-02-28	4	2031-03-01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 2025.3.1. 금액: 2025.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5일(=11일-6일)
- 2026.3.1. 금액: 2026.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0일(=15일-5일)
- 2027.3.1. 금액: 2027.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5일-4일)
- 2028.3.1. 금액: 2028.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6일-5일)
- 2029.3.1. 금액: 2029.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2일(=16일-4일)
- 2030.3.1. 금액: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2일(=17일-5일)
- 2031.3.1. 금액: 2031.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3일(=17일-4일)

2.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2024.9.1. 신규채용,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9-01	2024-09-30	개근	2024-10-01	1	2024-10-01	2025-08-31	0	2025-09-01
2024-10-01	2024-10-31	개근	2024-11-01	1	2024-11-01	2025-08-31	0	2025-09-01
2024-11-01	2024-11-30	개근	2024-12-01	1	2024-12-01	2025-08-31	1	2025-09-01
2024-12-01	2024-12-31	개근	2025-01-01	1	2025-01-01	2025-08-31	0	2025-09-01
2025-01-01	2025-01-31	개근	2025-02-01	1	2025-02-01	2025-08-31	0	2025-09-01
2025-02-01	2025-02-28	개근	2025-03-01	1	2025-03-01	2025-08-31	3	2025-09-01
2025-03-01	2025-03-31	개근	2025-04-01	1	2025-04-01	2025-08-31	0	2025-09-01
2025-04-01	2025-04-30	개근	2025-05-01	1	2025-05-01	2025-08-31	0	2025-09-01
2025-05-01	2025-05-31	개근	2025-06-01	1	2025-06-01	2025-08-31	0	2025-09-01
2025-06-01	2025-06-30	개근	2025-07-01	1	2025-07-01	2025-08-31	2	2025-09-01
2025-07-01	2025-07-31	개근	2025-08-01	1	2025-08-01	2025-08-31	0	2025-09-01
2025-08-01	2025-08-31	개근	미발생	0	-	-	-	-
합계				11			6	
근무기간		발생 요건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9-01	2025-02-28	80%이상 출근	2025-03-01	7.44[1]	2025-03-01	2026-02-28	2	2026-03-01
2025-03-01	2026-02-28	80%이상 출근	2026-03-01	15	2026-03-01	2027-02-28	4	2027-03-01
2026-03-01	2027-02-28	80%이상 출근	2027-03-01	15	2027-03-01	2028-02-29	5	2028-03-01
2027-03-01	2028-02-29	80%이상 출근	2028-03-01	16	2028-03-01	2029-02-28	4	2029-03-01
2028-03-01	2029-02-28	80%이상 출근	2029-03-01	16	2029-03-01	2030-02-28	5	2030-03-01
2029-03-01	2030-02-28	80%이상 출근	2030-03-01	17	2030-03-01	2031-02-28	4	2031-03-01

- [1]연차유급휴가일수(15일)×2024.9.1.~2025.2.28.계속근로일수(181일)÷2024.3.1.~2025.2.28.총일수(365일)≒7.44일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 2025.9.1. 금액: 2025.8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5일(=11일-6일)
  - 2026.3.1. 금액: 2026.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5.44일(=7.44일-2일)
  - 2027.3.1. 금액: 2027.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5일-4일)
  - 2028.3.1. 금액: 2028.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0일(=15일-5일)
  - 2029.3.1. 금액: 2029.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2일(=16일-4일)
  - 2030.3.1. 금액: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6일-5일)
  - 2031.3.1. 금액: 2031.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3일(=17일-4일)

3.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2024.3.1. 신규채용,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2024.7.27.~8.20., 2025.1.4.~2.28.)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4-03-31	개근	2024-04-01	1	2024-04-01	2025-02-28	0	2025-03-01
2024-04-01	2024-04-30	개근	2024-05-01	1	2024-05-01	2025-02-28	1	2025-03-01
2024-05-01	2024-05-31	개근	2024-06-01	1	2024-06-01	2025-02-28	0	2025-03-01
2024-06-01	2024-06-30	개근	2024-07-01	1	2024-07-01	2025-02-28	0	2025-03-01
2024-07-01	2024-07-31	개근	2024-08-01	1	2024-08-01	2025-02-28	0	2025-03-01
2024-08-01	2024-08-31	개근	미발생**	0	-	-	3	-
2024-09-01	2024-09-30	개근	2024-10-01	1	2024-10-01	2025-02-28	0	2025-03-01
2024-10-01	2024-10-31	개근	2024-11-01	1	2024-11-01	2025-02-28	0	2025-03-01
2024-11-01	2024-11-30	개근	2024-12-01	1	2024-12-01	2025-02-28	0	2025-03-01
2024-12-01	2024-12-31	개근	2025-01-01	1	2025-01-01	2025-02-28	2	2025-03-01
2025-01-01	2025-01-31	개근	미발생**	0	-	-	0	-
2025-02-01	2025-02-28	개근	미발생**	0	-	-	-	-
합계				9			6	
근무기간		발생 요건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5-02-28	80%이상 출근	2025-03-01	12	2025-03-01	2026-02-28	5	2026-03-01
2025-03-01	2026-02-28	80%이상 출근	2026-03-01	12	2026-03-01	2027-02-28	4	2027-03-01
2026-03-01	2027-02-28	80%이상 출근	2027-03-01	13	2027-03-01	2028-02-29	5	2028-03-01
2027-03-01	2028-02-29	80%이상 출근	2028-03-01	13	2029-03-01	2030-02-28	4	2029-03-01
2028-03-01	2029-02-28	80%이상 출근	2029-03-01	14	2028-03-01	2029-02-28	5	2030-03-01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 2025.3.1. 금액: 2025.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3일(=9일-6일)
- 2026.3.1. 금액: 2026.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7일(=12일-5일)
- 2027.3.1. 금액: 2027.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8일(=12일-4일)
- 2028.3.1. 금액: 2028.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8일(=13일-5일)
- 2029.3.1. 금액: 2029.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9일(=13일-4일)
- 2030.3.1. 금액: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9일(=14일-5일)

4.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2024.9.1. 신규채용,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기간: 2024.7.27.~8.20., 2025.1.4.~2.28.)

근무기간		개근 여부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9-01	2024-09-30	개근	2024-10-01	1	2024-10-01	2025-08-31	0	2025-09-01
2024-10-01	2024-10-31	개근	2024-11-01	1	2024-11-01	2025-08-31	0	2025-09-01
2024-11-01	2024-11-30	개근	2024-12-01	1	2024-12-01	2025-08-31	1	2025-09-01
2024-12-01	2024-12-31	개근	2025-01-01	1	2025-01-01	2025-08-31	0	2025-09-01
2025-01-01	2025-01-31	개근	2025-02-01	1	2025-02-01	2025-08-31	0	2025-09-01
2025-02-01	2025-02-28	개근	2025-03-01	1	2025-03-01	2025-08-31	3	2025-09-01
2025-03-01	2025-03-31	개근	2025-04-01	1	2025-04-01	2025-08-31	0	2025-09-01
2025-04-01	2025-04-30	개근	2025-05-01	1	2025-05-01	2025-08-31	0	2025-09-01
2025-05-01	2025-05-31	개근	2025-06-01	1	2025-06-01	2025-08-31	0	2025-09-01
2025-06-01	2025-06-30	개근	2025-07-01	1	2025-07-01	2025-08-31	2	2025-09-01
2025-07-01	2025-07-31	개근	2025-08-01	1	2025-08-01	2025-08-31	0	2025-09-01
2025-08-01	2025-08-31	개근	미발생	0	-	-	-	-
합계				11			6	
근무기간		발생 요건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9-01	2025-02-28	80%이상 출근	2025-03-01	5.95[1]	2025-03-01	2026-02-28	2	2026-03-01
2025-03-01	2026-02-28	80%이상 출근	2026-03-01	12	2026-03-01	2027-02-28	4	2027-03-01
2026-03-01	2027-02-28	80%이상 출근	2027-03-01	12	2027-03-01	2028-02-29	5	2028-03-01
2027-03-01	2028-02-29	80%이상 출근	2028-03-01	13	2028-03-01	2029-02-28	4	2029-03-01
2028-03-01	2029-02-28	80%이상 출근	2029-03-01	13	2029-03-01	2030-02-28	5	2030-03-01
2029-03-01	2030-02-28	80%이상 출근	2030-03-01	14	2030-03-01	2031-02-28	4	2031-03-01

- [1]연차유급휴가일수(12일)×2024.9.1.~2025.2.28.계속근로일수(181일)÷2024.3.1.~2025.2.28.총일수(365일)≒5.95일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 2025.9.1. 금액: 2025.8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5일(=11일-6일)
  - 2026.3.1. 금액: 2026.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3.95일(=5.95일-2일)
  - 2027.3.1. 금액: 2027.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8일(=12일-4일)
  - 2028.3.1. 금액: 2028.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7일(=12일-5일)
  - 2029.3.1. 금액: 2029.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9일(=13일-4일)
  - 2030.3.1. 금액: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8일(=13일-5일)
  - 2031.3.1. 금액: 2031.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0일(=14일-4일)

예시 근로자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

1. 계속근로기간: 2024.9.1.~2030.2.28.(5년 8개월), 상시근무자

가. 퇴직 시 회계연도와 채용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 비교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				채용일 기준 휴가일수			
근무기간		발생일자	연차일수	근무기간		발생일자	연차일수
2024-09-01	2025-02-28	2025-03-01	7.44일	2024-09-01	2025-08-31	2025-09-01	15일
2025-03-01	2026-02-28	2026-03-01	15일	2025-09-01	2026-08-31	2026-09-01	15일
2026-03-01	2027-02-28	2027-03-01	15일	2026-09-01	2027-08-31	2027-09-01	16일
2027-03-01	2028-02-29	2028-03-01	16일	2027-09-01	2028-08-31	2028-09-01	16일
2028-03-01	2029-02-28	2029-03-01	16일	2028-09-01	2029-08-31	2029-09-01	17일
2029-03-01	2030-02-28	미발생	0	2029-09-01	2030-02-28	미발생	0
계			69.44	계			79

나.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추가 지급) 금액
: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9.56일(=79일-69.44일)

2. 계속근로기간: 2024.9.1.~2030.8.31.(6년), 상시근무자

가. 퇴직 시 회계연도와 채용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 비교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				채용일 기준 휴가일수			
근무기간		발생일자	연차일수	근무기간		발생일자	연차일수
2024-09-01	2025-02-28	2025-03-01	7.44일	2024-09-01	2025-08-31	2025-09-01	15일
2025-03-01	2026-02-28	2026-03-01	15일	2025-09-01	2026-08-31	2026-09-01	15일
2026-03-01	2027-02-28	2027-03-01	15일	2026-09-01	2027-08-31	2027-09-01	16일
2027-03-01	2028-02-29	2028-03-01	16일	2027-09-01	2028-08-31	2028-09-01	16일
2028-03-01	2029-02-28	2029-03-01	16일	2028-09-01	2029-08-31	2029-09-01	17일
2029-03-01	2030-02-28	2030-03-01	17일	2029-09-01	2030-08-31	미발생	0
2030-03-01	2030-08-31	미발생	0				
계			86.44	계			79

나.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추가 지급) 금액: 없음

3. 계속근로기간: 2024.9.1.~2030.2.28.(5년 8개월), 방학 중 비근무자

가. 퇴직 시 회계연도와 채용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 비교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				채용일 기준 휴가일수			
근무기간		발생일자	연차일수	근무기간		발생일자	연차일수
2024-09-01	2025-02-28	2025-03-01	5.95일	2024-09-01	2025-08-31	2025-09-01	12일
2025-03-01	2026-02-28	2026-03-01	12일	2025-09-01	2026-08-31	2026-09-01	12일
2026-03-01	2027-02-28	2027-03-01	12일	2026-09-01	2027-08-31	2027-09-01	13일
2027-03-01	2028-02-29	2028-03-01	13일	2027-09-01	2028-08-31	2028-09-01	13일
2028-03-01	2029-02-28	2029-03-01	13일	2028-09-01	2029-08-31	2029-09-01	14일
2029-03-01	2030-02-28	미발생	0	2029-09-01	2030-02-28	미발생	0
계			55.95	계			64

나.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추가 지급) 금액
: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8.05일(=64일-55.95일)

4. 계속근로기간: 2024.9.1.~2030.8.31.(6년), 방학 중 비근무자

가. 퇴직 시 회계연도와 채용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 비교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				채용일 기준 휴가일수			
근무기간		발생일자	연차일수	근무기간		발생일자	연차일수
2024-09-01	2025-02-28	2025-03-01	5.95일	2024-09-01	2025-08-31	2025-09-01	12일
2025-03-01	2026-02-28	2026-03-01	12일	2025-09-01	2026-08-31	2026-09-01	12일
2026-03-01	2027-02-28	2027-03-01	12일	2026-09-01	2027-08-31	2027-09-01	13일
2027-03-01	2028-02-29	2028-03-01	13일	2027-09-01	2028-08-31	2028-09-01	13일
2028-03-01	2029-02-28	2029-03-01	13일	2028-09-01	2029-08-31	2029-09-01	14일
2029-03-01	2030-02-28	2030-03-01	14일	2029-09-01	2030-08-31	미발생	0
2030-03-01	2030-08-31	미발생	0				
계			69.95	계			64

나.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추가 지급) 금액: 없음

예시 휴직 · 복직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방법

1. 육아휴직(법정 1년(2025.3.1.~2026.2.28.)+약정 1년(2026.3.1.~2027.2.28.),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발생 요건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5-02-28	80%이상 출근	2025-03-01	15	2025-03-01	2026-02-28	법정 육아휴직 (1년)	2026-03-01
2025-03-01	2026-02-28	법정 육아휴직 (1년)	2026-03-01	15[1]	2026-03-01	2027-02-28	약정 육아휴직 (1년)	2027-03-01
2026-03-01	2027-02-28	약정 육아휴직 (1년)	미발생[2]	0	-	-	-	-
2027-03-01	2028-02-29	80%이상 출근	2028-03-01	16[3]	2028-03-01	2029-02-28	4	2029-03-01
2028-03-01	2029-02-28	80%이상 출근	2029-03-01	16	2029-03-01	2030-02-28	5	2030-03-01

1) 법정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기간은 출근 간주
2) 미발생: 약정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초과)이 1년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발생
3) 약정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초과)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 2026.3.1. 금액: 2026.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5일(육아휴직으로 미사용)
- 2027.3.1. 금액: 2027.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5일(육아휴직으로 미사용)
- 2028.3.1. 금액: 연차유급휴가 미발생으로 미사용 수당 없음
- 2029.3.1. 금액: 2029.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2일(=16일-4일)
- 2030.3.1. 금액: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6일-5일)

2. 육아휴직(법정 1년(2025.9.1.~2026.8.31.)+약정 1년(2026.9.1.~2027.8.31.),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발생 요건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5-02-28	80%이상 출근	2025-03-01	15	2025-03-01	2025-08-31	2	2026-03-01
					2025-09-01	2026-02-28	법정 육아휴직 (6개월)	
2025-03-01	2025-08-31	80%이상 출근	2026-03-01	15[1]	2026-03-01	2026-08-31	법정 육아휴직 (6개월)	2027-03-01
2025-09-01	2026-02-28	법정 육아휴직 (6개월)			2026-09-01	2027-02-28	약정 육아휴직 (6개월)	
2026-03-01	2026-08-31	법정 육아휴직 (6개월)	2027-03-01	7.65[2]	2027-03-01	2027-08-31	약정 육아휴직 (6개월)	2028-03-01
2026-09-01	2027-02-28	약정 육아휴직 (6개원)			2027-09-01	2028-02-29	5	
2027-03-01	2027-08-31	약정 육아휴직 (6개원)	2028-03-01	7.8[3]	2028-03-01	2029-02-28	4	2029-03-01
2027-09-01	2028-02-29	80%이상 출근						
2028-03-01	2029-02-28	80%이상 출근	2029-03-01	16[4]	2029-03-01	2030-02-28	5	2030-03-01

1) 법정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기간은 출근 간주

2)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일수 포함)×약정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출근(간주)일÷연간 소정근로일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2026.3.1.~2026.8.31. 출근(간주)일수(128일)
÷2026.3.1.~2027.2.28. 소정근로일수(251일)≒7.65일)

3)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일수 포함)×약정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출근(간주)일/연간 소정근로일수
(=연차유급휴가일수(16일)×2027.9.1.~2028.2.29. 출근(간주)일수(123일)
÷2027.3.1.~2028.2.29. 소정근로일수(252일)≒7.8일)

4) 약정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초과)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 2026.3.1. 금액: 2026.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3일(=15일-2일)
- 2027.3.1. 금액: 2027.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5일(육아휴직으로 미사용)
- 2028.3.1. 금액: 2028.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2.65일(=7.65일-5일)
- 2029.3.1. 금액: 2029.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3.8일(=7.8일-4일)
- 2030.3.1. 금액: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6일-5일)

3. 질병휴직(2026.3.1.~2027.2.28.,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발생 요건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5-02-28	80%이상 출근	2025-03-01	15	2025-03-01	2026-02-28	2	2026-03-01
2025-03-01	2026-02-28	80%이상 출근	2026-03-01	15	2026-03-01	2027-02-28	질병휴직 (1년)	2027-03-01
2026-03-01	2027-02-28	질병휴직 (1년)	미발생[1]	0	-	-	-	-
2027-03-01	2028-02-29	80%이상 출근	2028-03-01	16	2028-03-01	2029-02-28	4	2029-03-01
2028-03-01	2029-02-28	80%이상 출근	2029-03-01	16[2]	2029-03-01	2030-02-28	5	2030-03-01

1) 미발생 : 질병휴직 기간이 1년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발생

2) 질병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 2026.3.1. 금액: 2026.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3일(=15일-2일)
- 2027.3.1. 금액: 2027.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5일(질병휴직으로 미사용)
- 2028.3.1. 금액: 연차유급휴가 미발생으로 미사용 수당 없음
- 2029.3.1. 금액: 2029.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2일(=16일-4일)
- 2030.3.1. 금액: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6일-5일)

4. 질병휴직(2026.9.1.~2027.2.28., 상시근무자)

근무기간		발생 요건	연차발생일	발생 일수	사용기간		사용 일수	미사용연차 수당지급일
2024-03-01	2025-02-28	80%이상 출근	2025-03-01	15	2025-03-01	2026-02-28	2	2026-03-01
2025-03-01	2026-02-28	80%이상 출근	2026-03-01	15	2026-03-01	2026-08-31	4	2027-03-01
					2026-09-01	2027-02-28	질병휴직 (6개월)	
2026-03-01	2026-08-31	80%이상 출근	2027-03-01	7.65[1]	2027-03-01	2028-02-29	5	2028-03-01
2026-09-01	2027-02-28	질병휴직 (6개월)						
2027-03-01	2028-02-29	80%이상 출근	2028-03-01	16	2028-03-01	2029-02-28	4	2029-03-01
2028-03-01	2029-02-28	80%이상 출근	2029-03-01	16[2]	2029-03-01	2030-02-28	5	2030-03-01

1)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일수 포함)×질병휴직 기간을 제외한 출근(간주)일÷연간 소정근로일수
(=연차유급휴가일수(15일)×2026.3.1.~2026.8.31. 출근(간주)일수(128일)
÷2026.3.1.~2027.2.28. 소정근로일수(251일)≒7.65일)

2) 질병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 가산일수 산정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금액

- 2026.3.1. 금액: 2026.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3일(=15일-2일)
- 2027.3.1. 금액: 2027.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5일-4일)
- 2028.3.1. 금액: 2028.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2.65일(=7.65일-5일)
- 2029.3.1. 금액: 2029.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2일(=16일-4일)
- 2030.3.1. 금액: 2030.2월 기준 일급 통상임금×11일(=16일-5일)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Ⅵ 사례별 임금 지급방법

①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달의 임금 지급방법

가. 방학이 시작되는 주

- 방학식 날까지 포함하여 일할계산

※ 금요일에 방학하는 경우(여름・겨울방학 한정), 방학이 시작하는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로 인정

나. 방학이 종료(개학)되는 주

- 개학식 포함하여 일할계산

※ 방학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방학 중 공휴일은 무급이 원칙임 (복지법무과-7840, 2018.5.23.). 그러나 방학 중 출근일이 개학식과 연속되는 경우 출근일과 개학식 사이의 공휴일은(광복절 한정) 유급일로 인정 (복지법무과-12987, 2018.8.31.)

※ 방학 중 근로가 개학일과 연속되는 경우 유급 주휴 인정

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회계연도(학년도) 시작 월 급여 지급 방법 (① ~ ③ 조건 만족 시 전액 지급)

① 회계연도(학년도) 시작일 이전 혹은 시작일부터 고용관계를 유지

※ 회계연도(학년도) 시작일 : 학교는 매년 3.1., 기관은 매년 1.1.

② 회계연도(학년도) 시작일 이후와 개학일 사이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지 않음

③ 해당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함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속한 달 임금 계산

1. 여름방학

가. 방학이 시작되는 달

2024년 7월(금요일 방학식)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주휴 발생	8	9	10	11	12	13
14 주휴 발생	15	16	17	18	19 방학식	20
21 주휴 발생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학식	2024. 7. 19.(금)
학기 중 근로일	1~5일, 8~12일, 15~19일(총 15일)
주휴일	7일, 14일, 21일(총 3일) (21일: 금요일 방학식O, 유급일 인정O)
유급휴일	없음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18일*÷27일 *18일=학기 중 근로일 15일+유급주휴 3일

금요일이 방학식(근로일)인 경우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 인정

2024년 7월(금요일 방학식X)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주휴 발생	8	9	10	11	12	13
14 주휴 발생	15	16	17	18 방학식	19	20
21 주휴 미발생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학식	2024. 7. 18.(목)
학기 중 근로일	1~5일, 8~12일, 15~18일(총 14일)
주휴일	7일, 14일(총 2일) (21일: 금요일 방학식X, 유급일 인정X)
유급휴일	없음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16일*÷27일 *16일=학기 중 근로일 14일+유급주휴 2일

금요일이 방학식(근로일)이 아니므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에도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 미인정

나. 방학이 종료(개학)되는 달

1) 광복절 이전에 방학이 종료(개학)되는 경우

2024년 8월(광복절 전 개학 /개학식-출근일 연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방학 중 근로	9 방학 중 근로	10
11 주휴 발생	12 방학 중 근로	13 방학 중 근로	**14 개학식**	15 학기 중 유급휴일	16	17
18 주휴 발생	19	20	21	22	23	24
25 주휴 발생	26	27	28	29	30	31

개학식	2024. 8. 14.(수)
방학 중 근로일	8~9일, 12~13일(총 4일)
학기 중 근로일	14일, 16일, 19~23일, 26~30일 (총 12일)
주휴일	11일, 18일, 25일(총 3일) (11일: 개학식과 출근일 연속O, 유급일 인정O)
유급휴일	15일(학기 중 유급휴일)(총 1일)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20일*÷26일 *20일=방학 중 근로일 4일+학기 중 근로일 12일+학기 중 유급휴일1일 +유급주휴 3일

방학 중 근로일이 개학식과 연속되는 경우 유급 주휴 인정

2024년 8월(광복절 전 개학 /개학식, 출근일 연속X)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방학 중 근로	9 방학 중 근로	10
11 주휴 미발생	12 방학 중 근로	13	**14 개학식**	15 학기 중 유급휴일	16	17
18 주휴 발생	19	20	21	22	23	24
25 주휴 발생	26	27	28	29	30	31

개학식	2024. 8. 14.(수)
방학 중 근로일	8~9일, 12일(총 3일)
학기 중 근로일	14일, 16일, 19~23일, 26~30일 (총 12일)
주휴일	18일, 25일(총 2일) (11일: 개학식과 출근일 연속X, 유급일 인정X) (18일: 개학하는 주, 방학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개근O, 유급일 인정O)
유급휴일	15일(학기 중 유급휴일)(총 1일)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18일*÷26일 *18일=방학 중 근로일 3일+ 학기 중 근로일 12일 +학기 중 유급휴일 1일+유급주휴 2일

방학 중 근로일이 개학식과 연속되지 않는 경우 유급 주휴 미인정

2) 광복절 이후에 방학이 종료(개학)되는 경우

2024년 8월(광복절 후 개학 /출근일-광복절-개학식 연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방학 중 근로	15 방학 중 유급휴일	16 방학 중 근로	17
18 주휴 발생	19 방학 중 근로	20 방학 중 근로	21 개학식	22	23	24
25 주휴 발생	26	27	28	29	30	31

개학식	2023. 8. 21.(수)
방학 중 근로일	14일, 16일, 19~20일(총 4일)
학기 중 근로일	21~23일, 26~30일(총 8일)
주휴일	18일, 25일(총 2일) (18일: 개학식과 출근일 연속O, 유급일 인정O)
유급휴일	15일(방학 중 유급휴일)(총 1일)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15일*÷26일 *15일=방학 중 근로일 4일+학기 중 근로일 8일 +방학 중 유급휴일 1일+유급주휴 2일

방학 중 근로일이 개학식과 연속되는 경우 유급 주휴 인정, 근무일과 개학식 사이의 공휴일(광복절 한정) 유급일 인정

2024년 8월(광복절 전 개학 /개학식, 출근일 연속X)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방학 중 근로	14	15 방학 중 유급휴일 미인정	16 방학 중 근로	17
18 주휴 발생	19 방학 중 근로	20 방학 중 근로	21 개학식	22	23	24
25 주휴 발생	26	27	28	29	30	31

개학식	2023. 8. 21.(수)
방학 중 근로일	13일, 16일, 19~20일(총 4일)
학기 중 근로일	21~23일, 26~30일(총 8일)
주휴일	18일, 25일(총 2일) (18일: 개학식과 출근일 연속O, 유급일 인정O)
유급휴일	없음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14일*÷26일 *14일=방학 중 근로일 4일+학기 중 근로일 8일 +방학 중 유급휴일 0일+유급주휴 2일

방학 중 근로일이 개학식과 연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일과 개학식 사이의 공휴일은 유급일 미인정

2. 겨울방학

가. 방학이 시작되는 달

2024년 12월(금요일 방학식)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주휴 발생	2	3	4	5	6	7
8 주휴 발생	9	10	11	12	13	14
15 주휴 발생	16	17	18	19	20	21
22 주휴 발생	23	24	25 학기 중 유급휴일	26	**27 방학식**	28
29 주휴 발생	30	31				

방학식	2024. 12. 27.(금)
학기 중 근로일	2~6일, 9~13일, 16~20일, 23~24일, 26~27일(총 19일)
주휴일	1일, 8일, 15일, 22일, 29일(총 5일) (29일: 금요일 방학식O, 유급일 인정O)
유급휴일	25일(학기 중 유급휴일)(총 1일)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25일*÷27일 *25일=학기 중 근로일 19일+ 유급주휴 5일+학기 중 유급휴일 1일

금요일이 방학식(근로일)인 경우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 인정

2024년 12월(금요일 방학식X)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주휴 발생	2	3	4	5	6	7
8 주휴 발생	9	10	11	12	13	14
15 주휴 발생	16	17	18	19	20	21
22 주휴 발생	23	24	25 학기 중 유급휴일	**26 방학식**	27	28
29 주휴 미발생	30	31				

방학식	2024. 12. 26.(목)
학기 중 근로일	2~6일, 9~13일, 16~20일, 23~24일, 26일(총 18일)
주휴일	1일, 8일, 15일, 22일(총 4일) (29일: 금요일 방학식X, 유급일 인정X)
유급휴일	25일(학기 중 유급휴일)(총 1일)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23일*÷27일 *23일=학기 중 근로일 18일+ 유급주휴 4일+학기 중 유급휴일 1일

금요일이 방학식(근로일)이 아니므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에도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 미인정

2025년 1월(금요일 방학식)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학기 중 유급휴일	2	3 방학식	4
5 주휴 발생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설연휴	29 설날	30 설연휴	31	

방학식	2025. 1. 3.(금)
학기 중 근로일	2~3일(총 2일)
주휴일	5일(총 1일) (5일: 금요일 방학식O, 유급일 인정O)
유급휴일	1일(학기 중 유급휴일)(총 1일) (방학 중 공휴일(설 연휴) 무급)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4일*÷27일 *4일=학기 중 근로일 2일 +학기 중 유급휴일 1일+유급주휴 1일

금요일이 방학식(근로일)인 경우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 인정

2025년 1월(금요일 방학식X)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학기 중 유급휴일	2 방학식	3	4
5 주휴 미발생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설연휴	29 설날	30 설연휴	31	

방학식	2025. 1. 2.(목)
학기 중 근로일	2일(총 1일)
주휴일	없음 (5일: 금요일 방학식X, 유급일 인정X)
유급휴일	1일(학기 중 유급휴일)(총 1일) (방학 중 공휴일(설 연휴) 무급)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2일*÷27일 *2일=학기 중 근로일 1일+ 학기 중 유급휴일 1일+유급주휴 0일

금요일이 방학식(근로일)이 아니므로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에도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 미인정

나. 방학이 종료(개학)되는 달

2025년 2월(3.1.학년도 시작, 방학 중 근무일 연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방학 중 근로	27 방학 중 근로	28 방학 중 근로	

개학식	2025. 3. 3.(월)
방학 중 근로일	26~28일(총 3일)
학기 중 근로일	없음
주휴일	없음
유급휴일	없음
일할계산	(기본급 및 일부 수당)×3일*÷26일 *3일=방학 중 근로일 3일+학기 중 근로일 0일 +학기 중 유급휴일 0일+유급주휴 0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회계연도(학년도) 시작 월 급여 지급 방법

3월 회계연도 시작 월 급여 지급 방법

2025년 3월(3.1.개학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4 방학 중 근로	25 방학 중 근로	26 방학 중 근로	27	28	1 개학일
2 주휴 발생	3 대체휴일	4 개학식	5	6	7	8
9 주휴 발생	10	11	12	13	14	15
16 주휴 발생	17	18	19	20	21	22
23 주휴 발생	24	25	26	27	28	29
30 주휴 발생	31					

개학식	2025. 3. 4.(화)
방학 중 근로일	2.24~2.26일(총 3일)
학기 중 근로일	4~7일, 10~14일, 17~21일, 24~28일(총 19일)
주휴일	2일, 9일, 16일, 23일, 30일(총 5일)
유급휴일	2025. 3. 3.(월)(총 1일)
지급방법	전액 지급

① 3.1. 이전 또는 3.1.부터 고용관계 유지하고,
② 3.1. 이후와 개학일 사이에 방학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③ 해당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월급여 전액지급 (3.2. 주휴 인정)
* 유급휴일(3.1.)과 휴무일(토)이 중복 시 무급

2 휴가 사용시 임금 지급방법

가. 유급휴가

- 임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

나. 무급휴가

- 휴가 사용일수 만큼 통상임금에서 공제

다. 일부 기간이 유급인 휴가

1)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 유급
  - 최초 60일 기간 동안 월급 전액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인 경우 유급에 해당하는 기간(최초 60일)이 방학기간과 중복되면 중복기간은 무급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 · 후휴가제도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평소에 보장받던 임금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휴직을 보장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의해 원래 출근의무가 없어 무급인 산전 · 후휴가기간에 대해서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여원 68240-343, 2000. 10. 11.)

- 이후 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 무급
  -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급여 근로자 직접 신청
  - 단, 무급 기간에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전액 지급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30일분) 근로자가 직접 신청
  - 자격: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
  - 기한: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
  - 장소: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절차: 근로자 출산 → 기관(학교) 담당자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www.ei.go.kr))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가능

참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644, 회시일자 : 2015-06-09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서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되어 있으며, 이때 60일에 대한 급여 기준이 일수인지 기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에 있는 무급 휴무일에 대해서도 일급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 필요
- 관련 견해

<갑 설> 평소의 통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의미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 함. 따라서, 무급인 휴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지 않아도 됨.

<을 설> 법상 "최초 60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일수를 의미, 따라서 최초 60일 중 무급 휴무일이더라도 유급으로 보아 "60일분"을 지급 해야함.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6조에서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함.
  - 출산휴가기간 중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기간에는 무급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시간급 또는 일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 근로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시간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포함한 90일치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본다면 근로시 지급받는 임금보다 휴직시 지급받는 급여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임.

참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507, 회시일자 : 2016-07-26

질 의

-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갑 설>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
  (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

  <을 설>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
  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원
  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원 / 31 × 13 = 754,838원
  따라서, 당사 직원은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

  *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8=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예시 출산 전후 휴가기간 임금 지급 방법

- 월급제 상시근무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2023.4.6.~2023.7.4.
(최초 60일(2023.4.6.~6.4.)유급 / 30일 무급)

2023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주휴 발생	8 유급	9 유급	10 유급	11 유급	12 유급	13
14 주휴 발생	15 유급	16 유급	17 유급	18 유급	19 유급	20
21 주휴 발생	21 유급	22 유급	22 유급	22 유급	23 유급	24
25 주휴 발생	26 유급	27 유급	28 유급	29 유급	30 유급	

2023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주휴 발생	3 유급	4 유급	5 유급	6 유급	7 유급	8
9 주휴 발생	10 유급	11 유급	12 유급	13 유급	14 유급	15
16 주휴 발생	17 유급	18 유급	19 유급	20 유급	21 유급	22
23 주휴 발생	24 유급	25 유급	26 유급	27 유급	28 유급	29
30 주휴 발생	31 유급					

2023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유급	2 유급	3 유급	4 유급	5
6 주휴 발생	7 무급	8 무급	9 무급	10 무급	11 무급	12
13 주휴 미발생	14 무급	15 무급	16 무급	17 무급	18 무급	19
19 주휴 미발생	20 무급	21 무급	22 무급	23 무급	24 무급	25
26 주휴 미발생	27 무급	28 무급	29 무급	30 무급		

2023년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무급	2
3 주휴 미발생	4 무급	5 근로	6 근로	7 근로	8 근로	9
10 주휴 발생	11 근로	12 근로	13 근로	14 근로	15 근로	16
17 주휴 발생	18 근로	19 근로	20 근로	21 근로	22 근로	23
24 주휴 발생	25 근로	26 근로	27 근로	28 근로	29 근로	30
31 주휴 발생						

① 4월 급여: 유급기간 동안 월급 전액 지급

② 5월 급여: 유급기간 동안 월급 전액 지급

③ 6월 급여
- 급여(A):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공제액(B): 1일 통상임금×무급 해당일수(총 22일: 7~11일, 13~18일, 19~24일, 26~30일)
- 지급액(A-B): 급여-공제액 (공제액이 급여보다 큰 경우 정산(환수) 필요)
  ※ 6.5.~6.30.: 무급 (고용센터에서 지급)

④ 7월 급여
- 급여(A):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공제액(B): 1일 통상임금×무급 해당일수(총 3일: 1일, 3~4일)
- 지급액(A-B): 급여-공제액

2) 병가

- 유급일수 연간 30일(휴무일, 공휴일 제외)까지 유급으로 지급
  단, 특수운영직군은 연간 15일(휴무일, 공휴일 제외)까지 유급으로 지급
- 한 주에 유급 기간과 무급 기간이 함께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참고
- 유급 기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는 유급, 무급 기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무급에 해당
- 무급 기간에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전액 지급

예시 **병가 사용기간 임금 지급 방법**

- 월급제 상시근무자, 병가기간: 2023.8.1.~2023.9.29.(60일 연속사용 / 30일 유급)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유급	2 유급	3 유급	4 유급	5
6 주휴 발생	7 유급	8 유급	9 유급	10 유급	11 유급	12
13 주휴 발생	14 유급	15 유급 인정	16 유급	17 유급	18 유급	19
20 주휴 발생	21 유급	22 유급	23 유급	24 유급	25 유급	26
27 주휴 발생	28 유급	29 유급	30 유급	31 유급		

9~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유급	2
3 주휴 발생	4 유급	5 유급	6 유급	7 유급	8 유급	9
10 주휴 발생	11 유급	12 유급	13 무급	14 무급	15 무급	16
17 주휴 미발생	18 무급	19 무급	20 무급	21 무급	22 무급	23
24 주휴 미발생	25 무급	26 무급	27 무급	28 무급	29 무급	30
1 주휴 미발생	2 근로	3 근로	4 근로	5 근로	6 근로	7

① 8월 급여(유급병가 22일)
- 유급기간 동안 월급 전액 지급(정기상여금 포함)

② 9월 급여 (유급병가 8일(9.12.까지))
- 급여(A):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 공제액(B): 1일 통상임금×무급 해당일수(총 15일: 13~15일, 17~22일, 24일~29일)
- 지급액(A-B): 급여-공제액 (공제액이 급여보다 큰 경우 정산 필요)

③ 10월 급여
- 급여(A):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 공제액(B): 1일 통상임금×무급 해당일수(총 1일: 1일)
- 지급액(A-B): 급여-공제액

3) 난임치료휴가

- 연 3일 이내
  - 최초 1일 유급, 이후 잔여 일수는 무급
  - 무급 휴가 시 월급여에서 무급 해당일수 만큼 통상임금 공제

4)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이내
  -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연 2일 이내: 유급
  - 부모휴가 연 5일 이내: 유급
  - 무급 휴가 시 월급여에서 무급 해당일수 만큼 통상임금 공제

3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방법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근로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기관(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 필요
- ‘근로자의 날’은 휴일 사전 대체 불가(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음)
- 유급휴일 미적용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감시 · 단속적 적용 제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적용
-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적용, 단 ‘근로자의 날’ 하루만 근로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급휴일 미적용

가. 월급제

- 비근로할 경우: 월급 전액 지급(추가 지급 없음)
- 근로할 경우: 월급 +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 1.5) 추가 지급

나. 시급제

- 비근로할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 추가 지급(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단가)
  -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계산 (예: 1주 14시간 / 5일 = 2.8시간)
- 근로할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 추가 지급(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단가)+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시간당 단가×1.5) 추가 지급

다. 감시 · 단속적 근로자

- 비근로할 경우: 월급 전액 지급(추가 지급 없음)
- 근로할 경우: 월급 +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시간당 단가) 추가 지급 (가산분 적용 없음)

예시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방법

1.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8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수당 지급방법은?

<table>
<tr><td>근로시간</td><td colspan="3">• 근로시간: 09:00~23:00 (휴일근로)
• 휴게시간: 12:00~13:00, 18:00~18:30 (무급)
• 시간급 통상임금: 10,000원</td></tr>
<tr><td>휴일 · 야간 근로시간 산정</td><td colspan="3">• 휴일근로시간: 12.5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제외)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8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4.5시간 (18:00~23:00, 휴게시간 30분 제외)
• 야간근로시간: 1시간 (22:00~23:00)</td></tr>
<tr><td rowspan="4">임금 지급방법</td><td rowspan="2">휴일 근로</td><td>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가산)</td><td>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td></tr>
<tr><td>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td><td>10,000원 × 4.5시간 × 200% = 90,000원</td></tr>
<tr><td colspan="2">야간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td><td>10,000원 × 1시간 × 50% = 5,000원</td></tr>
<tr><td colspan="2">합계</td><td>215,000원</td></tr>
</table>

2. 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3시간 근로 시 임금 지급방법은?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 +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시간당 단가×1.5)
     : 1일 소정근로시간 2.8시간(=14시간/5일) × 12,500원
     + 휴일근로시간 3시간 × 12,500원 × 1.5 = 91,250원

3.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6시간 근로 시 임금 지급방법은?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 월급액 +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임금 지급방법

가. 지급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단, 일부 수당 전액 지급)

비례 지급*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전액 지급**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비례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

**전액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연장근로를 명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관(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근로 한 경우(단,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필요, 주 12시간 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에 따른 임금 지급방법

- 2024.9.1.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단축 전 근로시간 40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 30시간, 행정실무사,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 만 3년, 부양가족 2명(배우자, 미성년 자녀(첫째)), 직무관련수당 없음

2024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급여

- 1,986,000원(기본급)+150,000원(급식)+117,0000원(근속)+70,000원(가족)+500,000원(상여)=2,823,000원
  ※ 맞춤형복지비 별도

2024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석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월 급여

- 시간비례:
  (1,986,000원(기본급)+117,000원(근속)+150,000원(급식))×30시간÷40시간=1,689,750원
- 전액지급:
  850,000원(명절)+70,000원(가족)=920,000원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별도

5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 시 임금 지급방법

가. 지급방법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연간 180일(기간중의 휴일 포함) 범위 안에서 월급여액과 휴업급여액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정기상여금 미지급

6 신분변동 시 임금 지급방법

가. 월중 신분변동(신규채용, 휴직, 복직, 퇴직, 정직 등)

나. 지급방법

구분	항목
일할계산	기본급,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직무관련수당, 가족수당
월할계산	맞춤형복지비
전액지급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지급일 기준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다. 예외

- 2015.2.28. 이전 채용된 근로자는 육아(자녀당 최초 1년) · 질병 · 간병 휴직 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지급
- 육아휴직자(자녀당 최초 1년), 노조전임휴직자가 복직하여 지급기준일(명절일) 당시 재직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명절휴가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그 외의 휴직 후 복직 시 미지급)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자는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재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명절휴가비 지급

예시 신분변동에 따른 임금 지급방법

- 2024.3.15.~4.19. 대체직 행정실무사, 전임경력 만 1년, 부양가족 1명(배우자), 직무관련수당 없음

2024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채용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월 급여

- 일할계산:
  (1,986,000원(기본급)+150,000원(급식)
  +39,000원(근속)+40,000원(가족))
  ×14일÷26일≒1,192,690원
- 월할계산: 66,660원(≒800,000원(맞복)/12월)

2024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퇴직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월 급여

- 일할계산:
  (1,986,000원(기본급)+150,000원(급식)
  +39,000원(근속)+40,000원(가족))
  ×17일÷26일≒1,448,260원
- 월할계산: 66,660원(≒800,000원(맞복)/12월)

7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임금 지급방법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방법

-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지급

  *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1주 전부를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
- 휴업기간 중 명절휴가비 또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이 속한 경우
  : 휴업기간에도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은 전액 지급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제외하고 산정

나.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방법

-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처우개선수당을 제외한 금액(기본급, 직무관련수당)의 70%와 처우개선수당 전액 지급

예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방법

202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휴업	10 휴업	11
12 주휴 발생	13 휴업	14 휴업	15 공휴일	16 휴업	17 휴업	18
19 주휴 발생	20 휴업	21 휴업	22 휴업	23 휴업	24 휴업	25
26 주휴 발생	27	28	29	30	31	

- **2024.5.9.~5.24.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휴업할 경우 제외)**
  - 2024.5.9.~5.26.: 1일 평균임금의 70%×15일
  -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12일, 15일, 19일)과 1주 전부를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26일)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

2024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주휴 발생	16 휴업	17 휴업	18 휴업	19 휴업	20 휴업	21
22 주휴 발생	23 휴업	24 휴업	25 공휴일	26 휴업	27 방학식	28
29 주휴 발생	30	31				

- **2024.12.16.~2025.2.21. 급식실 현대화 공사로 휴업, 조리실무사, 근속연수(전임경력 포함) 만 8년, 부양가족 2명(배우자, 미성년 자녀(첫째)), 위험수당**
  - 2024년 12월분
    2024.12.1.~12.15.:
    (1,986,000원(기본급)+50,000원(위험)
    +150,000원(급식))×13일÷27일
    ≒1,052,518원
    +
    2024.12.16.~12.29:
    [(1,986,000원(기본급)+50,000원(위험))
    ×12일÷27일×0.7]+[150,000원(급식)
    ×12일÷27일]≒700,088원
    +
    2024.12.1.~12.31.
    312,000(근속)+70,000원(가족)=382,000원
    ≒
    2.134.600원(원단위 절사)

※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2025.1.), 명절휴가비(2025.1.) 별도

8 교육훈련에 따른 임금 지급방법

가. 법정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령에 정함에 따라 사용자가 실시하는 의무 교육

2) 임금 지급방법

- 상시근무자 또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학기 중 교육
  - 근로시간 내에 실시(이수)한 경우: 임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
  - 근로시간 외에 실시(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시간×시간급 통상임금×1.5 추가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교육
  - 교육이수시간 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 (가산분은 미적용)

나. 직무교육

1)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육 (법정의무교육 제외)

2) 임금 지급방법

- 상시근무자 또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학기 중 교육
  - 근로시간 내에 실시(이수)한 경우: 임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
  - 근로시간 외에 실시(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시간×시간급 통상임금 추가 지급 (가산분은 미적용)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교육
  - 교육이수시간 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 (가산분은 미적용)

9 조합원 교육에 따른 임금 지급방법

가. 조합원 교육시간

1)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경기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서」 제11조에 따라 사용한 교육시간

2) 임금 지급방법

- 상시근무자 또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학기 중 사용
  -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 교육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일에 교육 참석 시 임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사용
  - 연 8시간 이내에서 교육이수시간 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산정(가산분은 미적용)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Ⅶ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임금 지급방법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시설당직원)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 별도 계획에 따름

①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 임금 지급방법

가. 지급 기준

- 기본원칙: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가족수당
  - 기본급, 명절휴가비는 주 40시간 기준 금액으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별 지급금액, 시기, 요건 등

구 분	지급 시기	지급요건	신분 변동	비례 기준
정액 급식비	매월	• 기본요건 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자	일할	전액
명절 휴가비	설, 추석 (균분지급)	• 기본요건 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및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명절일 당일 포함) 계속 근로한 재직자(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 중인 자 포함)	충족 시 전액	근로 시간
정기 상여금	1월, 8월 (균분지급)	• 기본요건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및 지급일(1월・8월 보수지급일(17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재직자 ※ 보수지급일이 주말이어서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17일을 기준으로 함	충족 시 전액	전액
맞춤형 복지비	연 1회 배정	• 기본요건 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자 ※ 자율항목(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준용)	월할	전액
건강 검진비 지원	격년 1회 배정	•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는 시설미화원 중 만 40세 이상 (출생년도에 따라 격년 지원)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준용	-	전액
가족 수당	매월	• 기본요건 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자 중 지급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신청에 의한 지급)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준용	충족 시 전액	전액

※ 기본급(Ⅱ유형단가 적용)과 정액급식비를 별도 분리하여 지급(2021년 회계연도부터)
※ 방중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방학 중 급여: 12,500원(2024년 생활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 학기 중/방학 중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통상임금(연차수당)
    • 학기 중 통상 또는 단시간, 방학 중 단시간: 학기 중 시급으로 산정
    • 학기 중 통상 또는 단시간, 방학 중 초단시간: 학기 중(학기 중 시급), 방학 중(방학 중 시급)으로 산정시점 기준
※ 연중(학기·방학 모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급여: 12,500원(2024년 생활임금)×근로시간×근로일수

예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설미화원 임금 지급방법

- 2024.3.1. 신규채용, 시설미화원, 부양가족(배우자)

2024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월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기본급: 1,986,000원
  - 정액급식비: 15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기본급: 1,489,500원
    (=1,986,000원×30시간÷40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화, 목 6시간 근무)
  - 월 임금: 600,000원
    (= 근로시간(48시간)×12,500원(생활임금 시간급 단가))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별도
단,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해당없음

2024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근로자의 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월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기본급: 1,986,000원
  - 정액급식비: 15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기본급: 1,489,500원
    (=1,986,000원×30시간÷40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화, 목 6시간 근무)
  - 월 임금: 755,000원
    (=근로시간(56.4시간*)×12,500원(생활임금 시간급 단가))
    * 근로자의 날 2.4시간(12시간÷5일) 포함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별도
단,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해당없음

2024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기본급: 1,986,000원
  - 정액급식비: 15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정기상여금: 25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기본급: 1,489,500원
    (=1,986,000원×30시간÷40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정기상여금: 250,000원(전액지급)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화, 목 6시간 근무)
  - 월 임금: 600,000원
    (=근로시간(48시간*)×12,500원(생활임금 시간급 단가))
    * 8.15. 유급휴일 미적용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별도
단,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해당없음

2024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석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월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기본급: 1,986,000원
  - 정액급식비: 150,000원
  - 가족수당: 40,000원
  - 명절휴가비: 850,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기본급: 1,489,500원
    (=1,986,000원×30시간÷40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명절휴가비: 637,500원
    (=850,000원×30시간÷40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화, 목 6시간 근무)
  - 월 임금: 525,000원
    (=근로시간(42시간*)×12,500원(생활임금 시간급 단가))
    * 9.17. 유급휴일 미적용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별도
단,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해당없음

예시 학기와 방학 중 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임금 지급방법

1. 시설미화원, 학기 중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방학 중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2025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방학식	4
5 주휴 발생	6	7	8	9	10	11
12 주휴 발생	13	14	15	16	17	18
19 주휴 발생	20	21	22	23	24	25
26 주휴 발생	27	28 설연휴	29 설날	30 설연휴	31	

방학식	2025. 1. 3.(금)
1월 총 유급일수	27일
학기 중 근로일	2일
학기 중 주휴일	1일(5일)
학기 중 유급휴일	1일(1일)
방학 중 근로일	17일 ※ 방학 중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소정근로일과 관계없이 근로일에 포함
방학 중 주휴일	3일(12일, 19일, 26일)
방학 중 유급휴일	3일 (28일, 29일, 30일)

- 금요일이 방학식(근로일)인 경우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 인정
  ※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별도

수당명	산출내역		지급액 (A+B)
	학기 중(1.1.~1.3.) (A)	방학 중(1.4.~1.31.) (B)	
기본급	1,986,000원×30시간÷40시간×4일(=근로일 2일+주휴일 1일+유급휴일 1일)÷27일(1월 총 유급일수) = 220,666원	1,986,000원×18시간÷40시간×23일(=근로일 17일+주휴일 3일+유급휴일 3일)÷27일(1월 총 유급일수) = 761,300원	981,960원
정액 급식비	150,000원(시간비례 없음)		150,000원
명절 휴가비	연 1,700,000원×30시간/40시간(설, 추석 균분 지급)		637,500원 (설 지급분)
정기 상여금	연 500,000원(1, 8월 균분 지급)		250,000원 (1월 지급분)

2. 시설미화원, 학기 중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방학 중 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월, 목 6시간)

2025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신정	2	3 방학식	4
5 주휴 발생	6 근로	7	8	9 근로	10	11
12	13 근로	14	15	16 근로	17	18
19	20 근로	21	22	23 근로	24	25
26	27 근로	28 설연휴	29 설날	30 설연휴	31	

방학식	2025. 1. 3.(금)
1월 총 유급일수	27일
학기 중 근로일	2일
학기 중 주휴일	1일(5일)
학기 중 유급휴일	1일(1일)
방학 중 근로일	7일 (6일, 9일, 13일, 16일, 20일, 23일, 27일)
방학 중 유급휴일	해당없음 ※ 방학 중에는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이므로 유급휴일 적용받지 않음

- 금요일이 방학식(근로일)인 경우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일에 상응하는 유급일 인정

※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별도

수당명	산출내역		지급액 (A+B)
	학기 중(1.1.~1.3.) (A)	방학 중(1.4.~1.31.) (B)	
기본급	1,986,000원×30시간÷40시간×4일(=근로일 2일+주휴일 1일+유급휴일 1일)÷27일(1월 총 유급일수) = 220,666원	12,500원(생활임금 시간급 단가)×6시간×7일 = 525,000원	745,660원
정액 급식비	150,000원×4일(=근로일 2일+주휴일 1일+유급휴일 1일)÷27일(1월 총 유급일수) = 22,222원		22,220원
명절 휴가비	연 1,700,000원*30시간/40시간 (설, 추석 균분 지급)		637,500원 (설 지급분)
정기 상여금	연 500,000원 (1, 8월 균분 지급)		250,000원 (1월 지급분)

질의응답-시설미화원 임금 지급방법

1. 시설미화원이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한 경우 임금 지급방법은?
   -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거나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 통상임금의 50% 가산
   -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가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상임금의 50% 가산 미적용(근로분(통상임금의 100%)은 지급)

2. 방학 중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설미화원의 광복절(8월 15일) 임금 지급방법은?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계약에서 근무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짐
   - 관공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고 근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생활임금 시간급 단가)을 지급하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분 적용 없음
   - 관공서 공휴일을 비근무일로 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고 임금은 미지급함
   -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됨.

②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 임금 지급방법

가. 지급 기준

- 기본원칙: 기본급 +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정기상여금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 가족수당
  - 기본급은 주 48시간 기준 금액, 주 48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는 주 40시간 기준 금액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별 지급금액, 시기, 요건 등

구 분	지급 시기	지급요건	신분 변동	비례 기준
정액 급식비	매월	• 기본요건 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자	일할	전액
명절 휴가비	설, 추석 (균분지급)	• 기본요건 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및 명절일 기준 1개월 이상(명절일 당일 포함) 계속 근로한 재직자	충족 시 전액	근로 시간
정기 상여금	1월, 8월 (균분지급)	• 기본요건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및 지급일 (1월 · 8월 보수지급일(17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재직자	충족 시 전액	전액
맞춤형 복지비	연 1회 배정	• 기본요건 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자 ※ 자율항목(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준용)	월할	전액
건강 검진비 지원	격년 1회 배정	•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는 시설당직원 중 만 40세 이상 (출생년도에 따라 격년 지원) ※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 준용	-	전액
가족 수당	매월	• 기본요건 충족(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재직자 중 지급요건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신청에 의한 지급)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준용	충족 시 전액	전액

예시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시설당직원 임금 지급방법

- 2024.3.1. 신규채용, 시설당직원, 부양가족(배우자)

2024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월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기본급: 1,655,000원
    (=1,986,000원×40시간÷48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기본급: 1,489,500원
    (=1,986,000원×36시간÷48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감시 ·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휴일 미적용, 월 기본급은 1주 40시간 근로분과 1주 8시간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1주 48시간분)임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별도

2024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기본급: 1,655,000원
    (=1,986,000원×40시간÷48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정기상여금: 250,000원(전액지급)
-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기본급: 1,489,500원
    (=1,986,000원×36시간÷48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정기상여금: 250,000원(전액지급)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별도

- 2024.3.1. 신규채용, 시설당직원, 부양가족(배우자)

2024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추석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9월 급여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기본급: 1,655,000원
    (=1,986,000원×40시간÷48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명절휴가비: 850,000원
    (=850,000원×40시간÷40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기본급: 1,489,500원
    (=1,986,000원×36시간÷48시간)
  -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 가족수당: 40,000원(전액지급)
  - 명절휴가비: 765,000원
    (=850,000원×36시간÷40시간*)

  * 명절휴가비는 주 40시간 기준 금액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별도

질의응답-시설당직원 임금 지급방법

1. 부득이한 기관(학교)의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임금 지급방법은?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가산분 미적용) 으로 지급

2.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 방법은?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단, 부득이한 학교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가산분 미적용)) 추가 지급

3. 설 · 추석 명절 당일 임금 지급 방법은?
   - 설 · 추석 명절 당일은 유급휴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단, 부득이한 학교의 사정으로 설·추석 명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통상임금(가산분 미적용)) 추가 지급

4. 재량휴업일 임금 지급 방법은?
   -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재량휴업일은 정상 근무일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 아님

5. 1교 2인 근무(격일제 근무)하는 경우 임금 지급방법은?
   - 기본급, 명절휴가비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는 전액 지급
   - 예: 일 6시간 격일 근로자(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의 임금 지급방법

구 분	계산방법	금액
기본급	1,986,000원×21시간(6시간×3.5일)÷48시간	868,870원(원 단위 절사)
정액급식비	150,000원(전액지급)	150,000원
가족수당	전액지급	전액지급
명절휴가비	연1,700,000원×21시간(6시간×3.5일)÷40시간	892,500원 (설, 추석 각 446,250원)
정기상여금	연 500,000원(1월, 8월 각 250,000원)	
맞춤형 복지비	연 800 P(연 800,000원)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VIII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 개요

가. 적용 대상

-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다. 퇴직급여제도의 비교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정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 주체 및 책임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불가	불가	가능
사용자 부담금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운용손익 상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급여 수준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중간정산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담보대출)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수급권 보장	불완전	보장	
기타			다양한 투자 선택 가능, 세제혜택

② 퇴직급여 산정방법

가.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2) 퇴직금 산정방법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

$$\text{* 1일 평균임금:} \quad \frac{\text{①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text{②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

①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 단위 임금 총액 + 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연 단위 임금 총액의 3/12

구 분	기본급 및 수당
월 단위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연 단위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고,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역(歷)에 의하여 계산(89일~92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 중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산정

***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휴직(예: 자녀당 최초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기간은 제외

3) 적립금 산정방법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 - 전년도 퇴직적립금

예시 확정급여형(DB형) 퇴직급여 산정방법

1. 계속근로기간: 2022.3.1.~2025.2.28.(3년), 상시근무자

산정사유 발생(퇴직)일 이전 3개월		2024.12.1.~ 2024.12.31.	2025.1.1.~ 2025.1.31.	2025.2.1.~ 2025.2.28.	계
일수		31일	31일	28일	90일
산정사유 발생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기본급	1,986,000	1,986,000	1,986,000	5,958,000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150,000	150,000	150,000	450,000
	근속수당	156,000	156,000	156,000	468,00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계	2,292,000	2,292,000	2,292,000	6,876,000
산정사유 발생 (퇴직) 이전 1년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	구분	내용		금액	연단위×3/12
	정기상여금	2024.8월, 2025.1월 지급분		1,000,000	250,000
	명절휴가비	2024년 추석, 2025년 설 지급분		1,700,000	425,00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4.3.1. 청구권 발생분 (사용기간: 2023.3.1.~2024.2.29.)		864,430	216,108
	소계			3,564,430	891,108
1일 평균임금**		86,301.2원			
1일 통상임금***		90,921.85원			
퇴직금 총액		90,921.85원 × 30일 × 3년 = 8,182,960원(원단위 절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0일분): 864,430원(≒ (1,918,000원(기본급)+140,000원(급식)+117,000원(근속)+500,000원(상여)÷6월)÷209시간×8시간×10일)

** 1일 평균임금: 86,301.2원(≒(6,876,000원+891,108원)÷90일)

*** 1일 통상임금: 90,921.85원(≒ (1,986,000원(기본급)+150,000원(급식)+156,000원(근속)+500,000원(상여)÷6월)÷209시간×8시간)

※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2. 계속근로기간: 2021.3.1.~2024.8.31.(3년 6개월), 상시근무자

산정사유 발생(퇴직)일 이전 3개월		2024.6.1.~ 2024.6.30.	2024.7.1.~ 2024.7.31.	2024.8.1.~ 2024.8.31.	계
일수		30일	31일	31일	92일
산정사유 발생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기본급	1,986,000	1,986,000	1,986,000	5,958,000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150,000	150,000	150,000	450,000
	근속수당	156,000	156,000	156,000	468,00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계	2,292,000	2,292,000	2,292,000	6,876,000
산정사유 발생 (퇴직) 이전 1년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	구분	내용		금액	연단위×3/12
	정기상여금	2024.1월, 2024.8월 지급분		1,000,000	250,000
	명절휴가비	2023년 추석, 2024년 설 지급분		1,650,000	412,50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4.3.1. 청구권 발생분 (사용기간: 2023.3.1.~2024.2.29.)		864,430	216,108
	소계			3,514,430	878,608
1일 평균임금**		84,289.21원			
1일 통상임금***		90,921.85원			
퇴직금 총액		90,921.85원 × 30일 × (3년+ 184일(1년미만의 계속근로일수)/365일****) = 9,558,000원(원단위 절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0일분): 864,430원(≒ (1,918,000원(기본급)+140,000원(급식) +117,000원(근속)+500,000원(상여)÷6월)÷209시간 ×8시간×10일)

** 1일 평균임금: 84,289.21원(≒(6,876,000원+878,608원)÷92일)

*** 1일 통상임금: 90,921.85원(≒ (1,986,000원(기본급)+150,000원(급식)+156,000원(근속) +500,000원(상여)÷6월)÷209시간×8시간)

※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윤년의 경우에는 1년미만의 계속근로일수를 366일로 나누어 산정함

3. 계속근로기간: 2021.9.1.~2025.2.28.(3년 6개월), 상시근무자

산정사유 발생(퇴직)일 이전 3개월		2024.12.1.~ 2024.12.31.	2025.1.1.~ 2025.1.31.	2025.2.1.~ 2025.2.28.	계
일수		31일	31일	28일	90일
산정사유 발생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기본급	1,986,000	1,986,000	1,986,000	5,958,000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150,000	150,000	150,000	450,000
	근속수당	156,000	156,000	156,000	468,00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계	2,292,000	2,292,000	2,292,000	6,876,000
산정사유 발생 (퇴직) 이전 1년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	구분	내용		금액	연단위×3/12
	정기상여금	2024.8월, 2025.1월 지급분		1,000,000	250,000
	명절휴가비	2024년 추석, 2025년 설 지급분		1,700,000	425,00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4.3.1. 청구권 발생분 (사용기간: 2023.3.1.~2024.2.29.)		864,430	216,108
	소계			3,564,430	891,108
1일 평균임금**		86,301.2원			
1일 통상임금***		90,921.85원			
퇴직금 총액		90,921.85원 × 30일 × (3년+ 181일(1년미만의 계속근로일수)/365일****) = 9,535,580원(원단위 절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0일분): 864,430원(≒ (1,918,000원(기본급)+140,000원(급식) +117,000원(근속)+500,000원(상여)÷6월)÷209시간×8시간 ×10일)

** 1일 평균임금: 86,301.2원(≒(6,876,000원+891,108원)÷90일)

*** 1일 통상임금: 90,921.85원(≒ (1,986,000원(기본급)+150,000원(급식)+156,000원(근속) +500,000원(상여)÷6월)÷209시간×8시간)

※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윤년의 경우에는 1년미만의 계속근로일수를 366일로 나누어 산정함

4. 계속근로기간: 2021.3.1.~2025.2.28.(3년, 제외기간: 2024.3.1.~2025.2.28. 질병휴직), 상시근무자

산정사유 발생(퇴직)일 이전 3개월		2023.12.1.~ 2023.12.31.	2024.1.1.~ 2024.1.31.	2024.2.1.~ 2024.2.29.	계
일수		31일	31일	29일	91일
산정사유 발생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기본급	1,918,000	1,918,000	1,918,000	5,754,000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140,000	150,000	150,000	440,000
	근속수당	117,000	117,000	117,000	351,00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소계	2,175,000	2,185,000	2,185,000	6,545,000
산정사유 발생 (퇴직) 이전 1년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	구분	내용		금액	연단위×3/12
	정기상여금	2023.8월, 2024년 1월 지급분		1,000,000	250,000
	명절휴가비	2023년 추석, 2024년 설 지급분		1,650,000	412,500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23.3.1. 청구권 발생분 (사용기간: 2022.3.1.~2023.2.28.)		830,360	207,590
	소계			3,480,360	870,090
1일 평균임금**		81,484.50원			
1일 통상임금***		86,239.23원			
퇴직금 총액		86,239.23원 × 30일 × 3년= 7,761,530원(원단위 절사)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10일분): 830,360원(≒ (1,868,000원(기본급)+140,000원(급식) +78,000원(근속)+500,000원(상여)÷6월)÷209시간 ×8시간×10일)

** 1일 평균임금: 81,484.50원(≒(6,545,000원+870,090원)÷91일)

※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1일 통상임금: 86,239.23원(≒(1,986,000원(기본급)+150,000원(급식)+117,000원(근속))÷209시간×8시간)

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1)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연 1회 이상 매년 정기적으로 납입

2) 부담금 산정방법

$$\text{연간 임금 총액} \times \frac{1}{12}$$

가) 연간 임금 총액 포함 내역

구 분	기본급 및 수당
포함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미포함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포함)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과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모두 포함

나)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예: 육아휴직(자녀당 최초 1년) 등)

-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를 휴직한 경우: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
- 부담금 산정기간 일부를 휴직한 경우:

$$= \text{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times \frac{1}{12-\text{휴직기간}}$$

▸ 계속근로기간에 제외되는 휴직(예: 질병휴직 등)

-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를 휴직한 경우: 부담금 납입 없음
- 부담금 산정기간 일부를 휴직한 경우:

$$= \text{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포함한 연간 임금 총액} \times \frac{1}{12}$$

다)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 \text{퇴직 당해연도 근무기간동안 지급된 연간 임금 총액} \times \frac{1}{12}$$

예시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산정방법

1. 계속근로기간: 2022.3.1.~2025.2.28.(3년), 상시근로자

구분		2022.3.1.~2023.2.28.	2023.3.1.~2024.2.29	2024.3.1.~2025.2.28.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기본급	22,416,000	23,015,000	23,832,000
	직무관련 수당			
	정액급식비	1,680,000	1,700,000	1,800,000
	근속수당	936,000	1,404,000	1,872,000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소계(A)	25,032,000	26,119,000	27,504,000
연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	정기상여금	950,000	1,000,000	1,000,000
	명절휴가비	1,500,000	1,650,000	1,700,000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소계(B)	2,450,000	2,650,000	2,700,000
부담금 산정 금액 (A+B)/12		2,289,410	2,198,660	2,517,000

2. 계속근로기간: 2022.3.1.~2024.8.31.(2년 6개월), 상시근로자

구분		2022.3.1.~2023.2.28.	2023.3.1.~2024.2.29	2024.3.1.~2024.8.31.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기본급	22,416,000	23,015,000	11,916,000
	직무관련 수당			
	정액급식비	1,680,000	1,700,000	900,000
	근속수당	936,000	1,404,000	936,000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소계(A)	25,032,000	26,119,000	13,752,000
연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	정기상여금	950,000	1,000,000	500,000
	명절휴가비	1,500,000	1,650,000	0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소계(B)	2,450,000	2,650,000	500,000
부담금 산정 금액 (A+B)/12		2,290,160	2,397,410	1,187,660

3. 계속근로기간: 2022.3.1.~2025.2.28.(3년, 육아휴직기간(자녀당 최초 1년): 2024.3.1.~2025.2.28.), 상시근로자

구분		2022.3.1.~2023.2.28.	2023.3.1.~2024.2.29	2024.3.1.~2025.2.28.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기본급	22,416,000	23,015,000	0
	직무관련 수당			
	정액급식비	1,680,000	1,700,000	0
	근속수당	936,000	1,404,000	0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소계(A)	25,032,000	26,119,000	0
연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	정기상여금	950,000	1,000,000	0
	명절휴가비	1,500,000	1,650,000	0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소계(B)	2,450,000	2,650,000	0
부담금 산정 금액 (A+B)/12		2,289,410	2,198,660	2,198,660

4. 계속근로기간: 2022.3.1.~2025.2.28.(3년, 질병휴직: 2024.3.1.~2025.2.28.), 상시근로자

구분		2022.3.1.~2023.2.28.	2023.3.1.~2024.2.29	2024.3.1.~2025.2.28.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 금액
연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기본급	22,416,000	23,015,000	0
	직무관련 수당			
	정액급식비	1,680,000	1,700,000	0
	근속수당	936,000	1,404,000	0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소계(A)	25,032,000	26,119,000	0
연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	정기상여금	950,000	1,000,000	0
	명절휴가비	1,500,000	1,650,000	0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소계(B)	2,450,000	2,650,000	0
부담금 산정 금액 (A+B)/12		2,289,410	2,198,660	0

질의응답-퇴직금 산정방법

1. 교육공무직원 대체 근로자가 채용되어 6개월 근무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단절없이 6개월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자인지?
   - 6개월 근무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채용되었다면 근무기간이 연속된다 하더라도 이전 근로기간과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음

2. [DB형 퇴직연금]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비교하는 통상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 퇴직금채권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는 채권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함
     (대법원 20001.12.22. 선고 2000다56471 판결 등)
   - 따라서 평균임금과 비교할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시점은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퇴직연금복지과-4045, 2019.9.23.).

3.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의 평균임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출하는지?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나 육아휴직기간(자녀당 최초 1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되,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 산정
   -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하므로 퇴직금 산출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적용

4. 퇴직급여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5.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근로복지과-3162, 2012.9.12.).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Ⅸ 4대 보험

① 가입 대상

근로계약	월 근무시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1)] (주15시간 미만)			○	○
	60시간 이상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60시간 미만[2)]				○
	60시간 이상	○	○	○	○
3개월 이상	60시간 미만			○	○
	60시간 이상	○	○	○	○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활용하여 일용근로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 가입

2) 근로자 고용신고서 및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

※ 1)의 경우 외에는 2)로 신고

② 보험료율

가. 보험료율

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2024	7.09% (가입자 3.545% +사용자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2.95%)	기준소득월액의 9% (가입자 4.5% + 사용자 4.5%)	실업급여: 1.8% (근로자0.9%+사업주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사업주): 0.85%	월평균보수× 산재보험료율

나. 건강보험

1) 건강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로자	7.09%	3.545%	3.545%	
공무원	7.09%	3.545%		3.545%
사립학교 교원	7.09%	3.545%	2.127%	1.418%

2)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 · 벽지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 군인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20%
- 휴직자 경감: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

3)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
  (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
-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4)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3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

가. 건강보험

1) 신고기한: 3월 10일까지(시행령 제34조)

2) 신고대상: 매년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

3)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적용기간: 매년 4월/ 당해 4월 ~ 이듬해 3월

4) 고지 및 납부

-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10회로 분할 납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 사전 제외 신청: EDI에서 분할 적용 제외 신청

나.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과 달리 정산제도가 없어 보수총액신고 미실시

-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공단에서 보수월액을 산정하며 매년 7월 전년도 연말정산(세금) 시 신고된 소득(국세청 자료)을 기준으로 부과됨.

2) 국민연금 월보수액 통보 결과를 나이스에 반영(7월 급여 작업 시 반영)

다. 고용·산재보험

1) 신고기한: 3월 15일까지(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

2) 신고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상용근로자 및 퇴직근로자가 자동으로 조회되며, 조회 대상에 대하여 보수총액을 입력하여 제출

3)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월/적용기간: 매년 4월/ 당해 4월 ~ 이듬해 3월

4) 유의사항(일용근로자)

- 정산 대상년도 사업장 소속 전체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후 원단위 절사하기 때문에 정산금이 사업장에 추가 부과될 수 있다.*

* 55원 부과된 개별 일용근로자가 100명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원단위 절사한 금액 50원×100명=5,000원을 기납부하였으나, 정산보험료는 55원*100명=5,500원이 되어 500원 추가 부과

4 고용보험 과태료

가. 과태료 부과 사유

- 고용보험 자격취득 ·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 고용보험 자격취득 ·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신고 : 채용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상실 : 퇴직이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참고 교육공무직원 각종수당(처우개선수당) 지급 직종

➲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직종

-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아래 표 참조)
-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및 7개 직렬 지방공무원*의 휴직 · 결원 등으로 채용된 대체 근로자*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관리, 운전, 조리, 사무운영
- 각급학교 내 일자리사업 계획에 의해 채용된 중증 장애 근로자*

* 교무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 특수교육보조, 행정실보조

※ 그 외 직종의 경우, 소관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사업계획 등에 따름

연 번	직 종	비 고
1	사서	
2	사회복지사	wee센터 사회복지사 포함
3	영양사	
4	조리사	
5	조리실무사	
6	급식(배식)보조원	
7	행정실무사	
8	특수교육지도사	
9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0	초등보육전담사	
11	영상기사	
12	체육코치	일반, 전임코치
13	안내원	
14	운전원	
15	청소원	
16	통학차량보조원	
17	실습보조원	
18	시설관리(보조)원	
19	사감	
20	당직전담(경비)원	

참고 NEIS 급여 자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 > 나이스 > 자료실 > 교육자료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 > 나이스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만든사람들

총괄 · 기획

-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국장
- 김재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과장
- 허　승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관리담당 사무관
- 국미현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관리담당 주무관
- 김지현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관리담당 주무관

집필 · 편집

- 김선식 안양부안초등학교
- 김정민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 박수린 경기과학고등학교
- 백현정 남한중학교
- 안지연 송탄고등학교
- 오영미 황룡초등학교
- 이현정 금오초등학교
- 전미희 지축중학교
- 정상선 광덕초등학교
- 최　웅 발곡초등학교
- 피혜선 성지고등학교

검　토

- 김성미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노무사
- 권성애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 노무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매뉴얼

- 발　행: 2024년 3월
- 발행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 노사협력과